
주요국의 교육규제 및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

주요국의 교육규제 및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 김성기(협성대학교)

황준성(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덕난(중앙대학교)

2006.12.

한국교육개발원

머 리 말

날로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등의 추세는 각국의 교육체제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각국은 고등교육을 비롯한 교육서비스 산업을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세계의 우수한 대학을 자국에 유치하고 이 학교에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입학시켜 교육서비스 산업의 선도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호주도 학력과 자격을 통합시킨 국가자격제도를 정착시키면서 고등단계의 직업교육을 국제적으로 우수한 체제로 발전시켜 많은 나라의 학생들을 입학하게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심이 많으며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정책으로부터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 등 시범지역에서 규제개혁과 육성정책을 통해서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도모해왔다. 경쟁국들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을 검토하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는 싱가포르, 호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들이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규제를 개선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여하기를 바란다. 어려운 여건에서 연구를 추진한 연구진과 연구보조원 장승혁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2006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희일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 분석	2
나.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분석	2
다. 경쟁국들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분석	2
라. 향후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분석	3
3. 연구방법	3
가. 문헌연구	3
나. 전문가협의회	3
다. 출장면담	4
4. 용어의 정의	4
II.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	6
1. 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 산업	6
가. 개요	6
나. 교육서비스산업의 범위	7
다. 교육서비스산업의 제공자	8
2.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11
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개념	11
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의 개념	12
다. 각국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제도	14

III. 주요국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정책	19
1. 한국	19
가. 초·중등교육법상 특례 범위의 확대	19
나. 교육특구 내 특례 제도	23
2. 일본	31
가. 규제개혁과 구조개혁특구	31
나. 대학교육의 국제화	39
다. 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과 성과	40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43
3. 중국	53
가. 규제완화	53
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54
4. 싱가포르	62
가. 경제정책으로서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 정책	62
나. 외국교육기관의 현황	68
5. 미국	72
가. 개관	72
나. 차터스쿨 제도	74
다. 교육경영 영리조직	81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83
6. 태국	84
가. 개관	85
나. 태국국제학교 연합(ISAT)	86
다.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86
7. 홍콩·핀란드·호주	88
가. 홍콩	88

나. 핀란드	91
다. 호주	93
8. 종합검토	95
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동향	96
나. 교육서비스산업 육성정책	97
다. 외국교육기관 혹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책	98
IV. 제언	105
1. 경제정책 관점에서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105
2. 기존 교육체제의 개방성 제고	106
3. 직업기술교육의 국제화	106
4. 사학체제의 다양화	107
5.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균형	107
참 고 문 헌	109
부 록	119

표 차례

<표 III-1> 전국의 자율학교 현황(2004년 3월 현재)	21
<표 III-2> 일반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학교, 특수목적고의 비교	22
<표 III-3>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완화조항	29
<표 III-4> 중국의 외국인학교 사례	55
<표 III-5> 미국의 차터스쿨 현황(2005. 10)	74
<표 III-6> 협약학교와 다른 유형의 학교 비교	76
<표 III-7> 경쟁국의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규제 실태 비교	99
<표 III-8> 경쟁국의 외국인 학교에 관한 규제 실태 비교	100
<표 III-9> 경쟁국의 국제중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에 관한 규제 실태 비교	101

그림 차례

[그림 III-1] 학교의 종류와 특례	30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화, 고도정보화, 지식 경제 등의 환경 변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가장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 수립을 위한 외국 사례의 심층적 연구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가 교육서비스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태국, 영국, 호주 등이 교육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이 추진한 정책들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 연구는 우리와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추진해 온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실태를 몇 개의 나라들을 선정하여 파악하고 그들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세부적인 실상과 시사점을 분석, 도출해 내고자 한다.

한편 교육서비스 산업은 국가 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이 깊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교육서비스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 무역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서비스산업에 관련된 문제들이 자유무역협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까닭에서이다. 그리하여 각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선진국의 교육서비스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자국이 국제 교육서비스 산업의 중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영리법인을 국내에 진입하도록 허용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내국인 학생들도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 들이 검토되어 왔다. 이에 따른 영리

법인과 내국인학생들의 외국교육기관에의 입학 문제들도 중점 검토해 본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여러 경쟁국들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의 실태와 특히 영리법인과 규제개혁 등 주요한 쟁점과 개혁의 실상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과 규제개혁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 분석

교육서비스산업 혹은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과 이에 관련된 이론을 분석하여 연구의 접근방법을 정립한다.

나.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고 학교경영에 있어서 규제의 실태와 자율권 허용범위에 대해서 검토한다.

다. 경쟁국들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분석

경쟁국들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와 자율권 허용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고 내국인 입학 허용 관련 사항, 영리법인 허용 관련 사항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라. 향후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분석

향후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론을 정립하며, 우리나라와 경쟁국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협의회

교육분야, 경제분야 등 교육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각국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자문진은 회의와 원고용역 등을 통해서 연구에 도움을 주었으며 자문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 전(대구교육대학교)	박정희(싱가포르 한인학교)
구자역(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김 용(청주교육대학교)	이석희(한국교육개발원)
김현진(국민대학교)	정일환(대구가톨릭대학교)
김희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재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동열(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영란(한국교육개발원)
박선형(조선대학교)	

다. 출장면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와의 면담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 방향과 외국 사례의 시사점 등을 검토하였다.

4. 용어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관련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다소의 혼란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외국인학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외국인학교(분류번호 8042)를 초·중·고교를 포함하여 주한 외국인의 교육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각급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학교는 산업분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대학을 말한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5.5.31 법률 7533호 제2조(정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학교들이 있다.

교포학교: 어떤 나라에 체류 중인 자국민 자녀들을 위해 그 본국에서 설립한 학교를 말하며 설립주체는 본국인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이를 '외국교육기관'이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포학교에는 체재국 학생들의 입학은 제한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수요가 많아 체

제국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기도 하며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체제국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기도 한다. 이 학교는 종종 international school로 불린다.

체제국 학생 혹은 다국적 학생을 위한 학교: 체제국 학생 혹은 다국적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학교로서 영리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고 교육서비스 무역(trade in educational service)에서 이것이 주요 대상이 되는 학교이며 이 학교도 종종 international school라고 하기도 한다.

국제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국제고등학교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국제관계교육을 하는 학교이며 그 속에서 다시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고 넓은 특례를 인정받는 국제고등학교와 일반지역의 국제고등학교가 구별된다(경제자유구역지정법 제22조 참고).

학교경영법인(EMOs: Educ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학교경영법인은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이며 나라에 따라서 다르나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학교경영법인(for-profit educ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이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도 '학교설치회사'제도가 인정되어 있다.

자율학교: 자율학교는 일반학교처럼 관련법규를 확일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운영, 인사,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측면에 걸쳐서 특례를 인정받는 학교를 말한다. 그 명칭과 자율의 범위는 나라에 따라 다름. 우리나라의 자율학교, 미국의 차터 스쿨,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내의 일부 학교 등은 자율학교에 속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우리나라에는 영리법인으로서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자세한 개념은 2장에서 다루어진다.

II.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여 교육서비스 산업의 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1. 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 산업

가. 개요

본 연구에서 교육서비스 산업(educational service)은 산업 분류표상에 게재된 교육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즉 초·중등교육과 고등학교를 포함한 일반학교와 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서비스 산업은 지식경제 시대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의 하나로서 선진국들은 그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사용하는 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분류체계이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산업분류는 2000년 1월 7일에 8차 개정되고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UN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산업분류는 이와 같이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분류에서 우선 사업체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도 중요하다. 교육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업체(학교 등)가 있고 활동(교육 활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는 농업·임업을 비롯하여 국제 및 외국기관까지 18개이며 교육서비스산업은 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산업'(분류번호

80)은 다시 유아 및 초등교육기관(801), 중등교육기관(802), 고등교육기관(803),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804), 기타교육기관(809) 등 5개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들은 다시 세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기관 분류방법은 학문상, 실제상의 분류방법과 다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아교육기관을 초등교육기관에 포함시킨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유아교육기관은 초등교육기관과 별도의 교육체계로 다루어진다. 또한 보육기관은 교육서비스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보육도 교육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일반고등학교, 상업 및 정보산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기타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만을 명시함으로써 농업고등학교는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분류상의 교육기관 분류가 학문상, 실제상의 분류방법과 다른 것은 분류체계가 가진 목적 즉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령의 개정으로 수시로 변하는 교육기관의 종류를 바로 바로 산업분류에 반영하면 종전의 분류체계에 의한 통계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이 감소될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다음은 현행 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산업의 분류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교육서비스산업의 범위

교육서비스산업은 유아, 초등, 중등, 고등, 특수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전문대학과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의 교육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서비스 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실업자와 장애자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는 교육서비스산업이 아니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전문체육인 양성교육기관을 제외한 운동 강습 서비스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있는 가정교사도 교육서비스산업이 아니라 가사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직원의 훈련기관이 독립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이 교육서비스산업이 아니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분류되어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산업 제공 기관별로 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교육서비스산업의 제공자

1) 유·초등교육기관

유·초등교육기관(801)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로 나뉘어진다.

① 유아교육기관(8011)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예시적으로 유치원을 들 수 있고 보육원 및 탁아기관은 제외한다. 이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된다.

② 초등학교(8012)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와 공민학교 등을 들 수 있다.

2) 중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802)은 일반교양, 기술 및 직업교육을 위한 중등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나뉘어지는데 성인을 위한 제반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사업은 여기서 제외되고 후술하는 기타 교육기관에 분류된다.

① 일반중등교육기관(8021)은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로 나뉘어진다. 중학교(80211)는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교육내용을 보다 확장시키도록 설립된 교육기관

을 말한다. 고등공민학교도 이에 해당한다. 일반고등학교(80212)는 인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상급학교 진학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학교이다. 인문계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기관(8022)은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술 및 직업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업 및 정보산업고등학교(80221)가 있는데 이는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기 및 정보처리업무 등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상업고등학교, 컴퓨터 관련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공업고등학교(80222)는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조공정 및 기계와 관련된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80229)는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타 기술 및 직업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농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803)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 나뉘어진다. 전문대학(80301)은 중등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기술 및 직업적인 학과내용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대학교(80302)는 중등교육 교과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전공분야에 관해서 이론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조사·연구하게 하고 자격 및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특수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도 포함된다. 기술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간호대학교, 교육대학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학원(80303)은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학과정에서 전공한 동일주제에 관해 고도의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804) 중에서 특수학교(8041)는 초·중·고교를 포함하여 농아, 맹아, 정신박약자 등 정신 및 신체 장애자를 교육하기 위한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인학교(8042)는 초·중·고교를 포함하여 주한 외국인의 교육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5) 기타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809)에는 사무관련 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교습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이 있다.

사무관련 교육기관(8091) 중 컴퓨터 학원(80911)은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작동, 근거리통신망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직원훈련기관(80912)은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공무원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등도 이에 포함된다.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80919)에는 속기학원, 비서학원, 부기학원, 사무실무교육, 경영관련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092) 중 운전학원(80921)은 자동차,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운전학원, 항공훈련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0929)은 기타의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는 통신기술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등을 들 수 있다.

일반교습학원(8093) 중 일반입시학원(80931)은 상급학교 진학 및 각종 시험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입시학원, 고시학원, 일반교과 교습소, 속셈학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나,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8091, 8092)은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언어학원(80932)는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학원도 포함된다. 다만 언어교정학원은 기타계로 분류된다.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80933)은 방문 및 통신방법으로 일반 교과 교육을 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방문 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통신이용 교육, 인터넷이용 교육 등이 여기에 포함되나 정규교과과정의 통신교육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으로 분류된다(802, 803).

그 외 기타 교육기관(8099) 중 사회교육시설(80991)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산업 활동을 말한다.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술학원(80992)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예술에 관한 학습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음악학원·미술학원·무용학원·연기학원·예술입시학원·모델학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 분류안된 교육기관(80999)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서, 속독학원·웅변학원·체육전문강사 교육·체육 입시학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나, 시설없이 운동강습하는 서비스(88329)나 무술교육시설(88391) 등은 다른 곳으로 분류된다.

2.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개념

앞에서 살펴본 교육기관들이 교육서비스 제공자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그러한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실체로서 법인제도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서비스 제공자이지만, 그것을 설립 경영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들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설치 경영하는 법적주체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이다. 학교법인은 우리나라 민사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자체가 법인이 되고 그것을 설치 경영하

는 법인만이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국 등은 미국과 같이 학교 자체가 법인화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영리회사제도가 허용되어 있고 이 영리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학교를 운영하는 영리법인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육기관 자체와 그것을 설치 경영하는 별도의 법인은 모두 교육서비스 제공의 주체라는 점에서 그 법적 관계와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다른 점을 인식하는 일은 교육서비스산업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의 개념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영리법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리법인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외국 교육기관들이 들어올 것이라던가,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된다던가 하는 논의들과 이를 둘러싼 찬반론들이 이들이다. 그런데 사실은 영리법인의 개념이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고 학계에서도 그 개념의 불명료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개념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영리법인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논의는 자칫 내용이 불명료한 논란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민들 일반이나 언론 그리고 정부관계자들은 영리법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추진과 관련해서도 외국의 경우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을 허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것들이 종종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영리법인의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영리법인의 개념은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미국에서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개념이 다소 다르다. 또 독일과 일본에서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개념이 서

로 다르다. 그 이유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각국에서 법령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법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즉 각국은 역사적 배경,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허용에 있어서 영리법인을 허용한다고 할 때에도 그 의미가 한국에서와 미국에서 서로 다를 수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제 조약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문제이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영리법인이라는 제도가 국제 조약이나 협정서 속에 포함되게 되고 이는 국제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있을 것이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각국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유사한 법권(法圈)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제도가 호환될 수 있으나 법구조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는 법적 성격의 호환성이 작아서 그 개념들이 부드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영국과 영국계의 법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등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개념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무역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미 이들 나라들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영리법인·비영리법인제도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무역에 있어서 제도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미국과 같은 경우 이미 국내법으로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을 허용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 학교는 영리사업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반면, 한국의 입장으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을 미국에만 허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국내법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인프라 속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혹은 교육기관의 법적인 호환성이 부족하게 되고 그만큼 교육 분야의 무역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둘째로 비영리법인이 이익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학교법인만 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때 '비영리'라는 개념이 이익을 내는 활동을 전혀 배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된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입할 때 비영리법인으로 허용하더라도 그들이 전혀 이익을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로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한다고 할 때 그 영리법인이 한국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영리법인인지 본국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영리법인인지 하는 문제가 명료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에 따른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아직 영리회사에 의한 학교경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개정은 민법이나 상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특별법을 통해서 영리회사에 의한 학교경영을 허용하는 개정방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리회사에 의한 학교경영 문제는 민법이나 상법의 기본적인 틀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특별법'으로 '기본법'을 개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개정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과 상법은 민사와 상사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분야의 헌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개정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더욱이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을 외국인에게만 허용한다면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민법과 상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 각국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제도

단체란 것은 인간들이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영역 등에서 공동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단체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촉진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소산으로서 법제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국민들이 영위하는 각종 다양한 공동생활과 단체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하거나 규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1) 일본의 비영리공익법인, 영리법인 및 중간법인

일본의 경우에는 민법 제34조가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 동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영리사단법인'이 있다. 이 중에서 영리사단법인은 상행위를 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상사회사와 광업·어업 등 상행위 외의 사업을 행하는 민사회사로 나뉜다. 그런데 민사회사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상법도 민사회사를 상사회사로 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김진우, 2003: 102).

일본에서 공익도 영리도 추구하지 않는 중간적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없으면 법인설립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4월 1일부터는 '중간법인법'이라는 제명의 단행법이 시행되면서 동창회, 친목회, 동호회, 업계 단체 및 상조회 등의 구성원의 공통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잉여금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중간법인)을 허용하였다. 즉 일본 법제상 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잉여금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데 비하여 비영리법인과 중간법인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는 구성원이 없는 재단은 이익 분배가 불가능하므로 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즉 일본에서 재단은 법률상 비영리법인이 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그러나 구성원이 없다고 해서 이익분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식적 논리이고 사실상은 재단의 내부적 외부적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익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단을 자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학교경영을 하는 주식회사가 생겼다. 이 경우 주식회사는 분명히 영리법인이므로 일본에서는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제도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독일의 비영리사단 및 영리사단법인

독일에서의 통설은 독일민법 제22조상의 영리사단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단은 모두 비영리 사단으로 분류한다.

첫째, 외부시장에 대하여(즉 사단의 비구성원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지속적으로 有償의 급부(재화이든 서비스이든 불문)를 공급하는 사단은 그 사단 혹은 그의 구성원의 영리지향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리사단으로 본다. 즉 기업적 경쟁에 계획적으로 참여하는 사단은 영리사단이다.

둘째, 내부시장에 대하여(사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지속적으로 유상의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도 영리사단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유상이라는 의미는 급부의 대가가 일반적 거래에 해당하면 족하며 요금 또는 회비의 형식을 띠더라도 상관없다. 이와 같은 종류의 영리사단으로는 그의 구성원에 대하여 신용, 물품 또는 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하는 공무원 연금배장, 노동조합원의 연금매장, 생활협동조합 등이 있다.

셋째, 구성원이 고유의 기업 활동의 일부를 그 기업이 아닌 사단에서 행하는 협동조합형 사단의 경우도 영리사단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단은 그 구성원이 고유의 이익지향적인 기업 활동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조직적으로 비영리사단으로 이전한 경우인데 영리성이 인정된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전화에 의한 택시운행예약을 받기 위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 무전실을 설치하여 그 구성원인 택시운수업자에게 중개 업무를 해온 택시운수업자가 결성한 사단에 대하여 영리성을 인정하였다(김진우, 전계논문: 110-111).

독일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이익 분배라는 것은 영리와 비영리를 구별함에 있어서 하나의 충분조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을 요소로 하지 않는 재단의 경우에도 영리재단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존재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인적 회사 또는 자본회사에 자본참가를 하거나, 또는 합자회사의 책임 사원이자 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을 총칭하는 소위 '기업재단'이 그 대표적 예이다(김진우, 전계논문:110).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인격이 있는 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즉 연방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공공법인인면서 국가시설이라는 점과 동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상식, 2004; 이시우, 2002). 이와 같은 공공사단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향후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그만큼 법인의 법적 형태는 복잡함을 시사하고 있다.

3) 미국의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미국에서는 사단과 재단의 구별은 뚜렷하지 않으며 법형식으로만 보면 미국 민사법에는 한국민사법상의 재단법인에 직접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것은 미국법에는 구성원이 없는 법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김진우, 전게서:112). 미국의 사립학교가 우리나라와 같이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학교자체가 법인인 것은 이러한 미국 민법상의 구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단체의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취득은 일반적으로 준칙주의에 의한다. 단체의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구별은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구별은 세법의 문제로 여겨진다. 즉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리와 비영리의 구별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는 그 내부인 또는 법인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자의 이익 추구가 금지되어 있는 단체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비영리법인의 특징을 이루는 소위 '이익분배금지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일체의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수익 또는 자산을 단체의 내부인 또는 그 단체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에 대한 이와 같은 미국의 법제는 교육개방에서 논의되는 외국의 영리법인의 진입 허용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익분배를 할 수 있는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미국법상의 영리법인의 의미이다. 이익분배가 영리성을 표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개념에서도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영리법인 구별의 기준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이 허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국가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의 책무성과 효율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은 후술한다.

III. 주요국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정책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과 경쟁국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와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1. 한국

우리나라에서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은 아직 찾기 어렵다. 그러나 각종 특례규정을 통해서 교육체제의 활성화를 기하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학교운영상의 각종 특례와 특별지구내의 특례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 초·중등교육법상 특례 범위의 확대

1) 학교의 종류

교육목적에 따라 학교의 형태를 구분하자면 일반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체험한 학교는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이다. 여기에 더하여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함)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직업교육분야 특성화고'라 함)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대안교육분야 특성화고'라 함),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특성화중학교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제주특별자치

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및 교육특구 내 학교는 외국인 교원 채용 등에 있어 특례를 누린다. 이러한 학교들 중에서 교육감이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운영특례대상학교)로 지정할 경우 더 많은 자율권을 누릴 수 있다.

2) 자율학교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서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교장, 교감 자격)·제24조제1항(학년도 개시와 종료)·제26조제1항(학년에 의한 진급·졸업)·제29조제1항(국정 및 검인정교과서 사용)·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초·중등학교의 수업년한)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이를 동시행령 제105조에서 '자율학교'라고 명명하고 있다.

2004년 2월 17일 법개정에 따라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에서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까지는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교육감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서는 자율학교 지정대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나 5호의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학교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자율학교의 장은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교사정원의 1/3까지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주로 농촌고교, 특성화학교, 특수 목적고등학교 등에 한정되어 있다.

<표 III-1> 전국의 자율학교 현황(2004년 3월 현재)

구 분	예/체능고	특성화고		농어촌고교	통합형고	기타
		직업교육	대안교육			
서울 (6)	국악고 덕원예고 서울국악예고 서울미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부산 (5)		부산디자인고	지구촌고	장안제일고		부산국제고 부산진여상
대구 (2)	경북예술고		달구벌고			
인천 (5)				인천과학고 강화고	강남고	부평공고 인천해양과 학교
광주 (2)	광주예술고 광주체육고					
대전 (2)	대전예술고 대전체육고					
울산 (2)	울산예술고	울산애니원고				
경기 (15)	계원예고 경기예술고	한국애니메이션고 한국도예고 청담정보통신고 한국조리과학고 한국관광고	대명고 두레자연고	양서고 발안농생명 고 경화여고	양평고 일동종고 수원농고	
강원 (5)	강원체육고	삼척전자공고 경포고		홍천정보고	강릉정보 고	
충북 (4)	충북체육고		양업고	충원고	증평정보 고	
충남 (8)	성남고 충남예술고	충남인터넷고	한마음고	서천고 연무대기계 공고 한일고	병천고	
전북 (7)	전주예술고		세인고	강호사이버 고 김제자연고	정읍제일 고	전북제일고

Ⅲ. 주요국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정책

구 분	예/체능고	특성화고		농어촌고교	통합형고	기타
		직업교육	대안교육			
				익산고		
전남 (4)			영산성지고 한빛고	강진농고	장설실고	
경북 (10)	포항예술고		경주화랑고	경북외고 금오공고 삼성고 안동생명과학고 영남삼육고 포항정보여고 풍산고	성주고	
경남 (5)			간디학교 원경고	남해해성고 창녕공고 함안고		
제주 (1)				한림고		
계 (83교)	20	10	12	26	10	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육복지정책과 자료

<표 III-2> 일반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학교, 특수목적고의 비교

구 분	일반사립고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	특성화학교	특수목적고
성 격	○ 일반적 보통교육	○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학교 중에서 선정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 고등학교: 직업교육, 대안교육	○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
학생 선발	○ 평준화 지역: 학군별 배정 ○ 비평준화지역: 시·도별 모집	○ 자율	○ 자율	○ 교육감의 승인 필요 - 전국 또는 일부 지역
	○ 평준화 지역: 학생배정 ○ 비평준화 지역: 학교별 선발(시행령77조, 84조)	○ 학교별 선발(시행령105조) * 지필고사 불허(논술 제외)	○ 지필시험 불허	○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 선발
교원자격	○ 교원자격 필요(법21조) ○ 산학겸임교사 등 활용	○ 학교장은 자격 불필요(법61조) ○ 1/3까지 산학겸임	○ 1/3까지 산학겸임교사 등 활용	○ 교원자격 필요(법21조) ○ 산학겸임교사 등

주요국의 교육규제 및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

구 분	일반사립고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	특성화학교	특수목적고
	가능	교사 등 활용(시행령35조)		활용 가능(법22조)
교육과정	○ 사·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법23조)	○ 국민공통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법61조)	○ 좌동	○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수 단위 조정
교과서	○ 국정, 검·인정 교과서 사용(법29조)	○ 국민공통과정 과목 외에는 자율(법61조)	○ 국민공통과정 과목 외에는 자율(법61조)	○ 국정, 검·인정 및 전문 교과서 사용(법29조)
수업일수	○ 220일 이상(시행령45조)	○ 198일 이상(시행령 제45조)	○ 220일 이상(시행령45조)	○ 220일 이상(시행령 45조)
재정관리	법인 전입금	○ 수익용 기본 재산 발생 수익의 80% 이상	○ 학생납입금 대비 8:2이상	○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익의 80% 이상
	등록금	○ 교육감이 결정(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2조)	○ 자율(당해지역 일반계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장이 결정)	○ 교육감이 결정 - 어학·예·체능 사립고교는 당해 학교장이 결정
	장학생 비율		○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재정결합보조	○ 보조 가능	○ 없음	○ 보조 가능
학교현장	○ 제정가능(규정14조)	○ 제정·공개 의무화	○ 제정·공개 의무화	○ 제정가능(규정14조)
학교평가	○ 평가실시 가능(법9조)	○ 매년 평가 및 결과발표회 개최	○ 평가실시 가능(법9조)	○ 평가실시 가능(법9조)

* 위의 표에서 법은 ‘초·중등교육법’을,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규정은 ‘고등학교 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 가리킴. 자율학교로 지정될 경우 자율학교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은 달라짐.

자료: 성열관·김성기·하봉운·유진호(2005), 가칭 인천국제 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p.26.

나. 교육특구 내 특례 제도

1) 특구 내 특례 제도의 주요내용

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설립하는 국·공립학교와 사인이나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가 있다.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즉 시립·군립·구립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공립학교'라 한다.

특구법 제17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여기서는 군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이다. 교장 그 밖의 교원의 임용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다.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한 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에 한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에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자율학교를 의미함)의 장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004년 9월 제정된 동시행령 제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는 특구 내 공립학교의 교원 배치기준을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치(대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상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나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위의 두 경우와 함께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격으로 외국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구지자체"라 함)의 장은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특구법상의 특례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가) 공립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는 시립과 도립만 가능했던 것을 지역특구법은 시립, 군립, 구립학교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학교설립 시 설립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지역특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 ○ 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공립학교는 시립, 도립(광역자치단체설립 학교)만 가능[3] ○ 학교 설립시 법[4①]의 설비·설비 등 설립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초·중·고등학교마다 전국 일률적인 교원의 정원·배치 기준 충족 ○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 국가공무원 ○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교원 등은 교육부장관이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설립 공립학교[17,18] ○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기초 자치 단체는 시립·군립·구립 학교를 설립할 수 있음 *설립 주체: 교육자치단체(광역시도 교육감) →일반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장) ○ 설비·시설등 설립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설립기준: 대통령령→시도조례 ○ 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 교사정원의 1/3을 산학겸임교사로 대치 가능 ○ 시·군·구립학교 교원의 신분: 지방공무원 ○ 특구장이 교장 및 교원 임용

나)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특구법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특성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원 및 강사로 임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1) 재정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2005), 기지정 특구의 규제특례 적용현황 및 특구유형별 규제특례 적용모델.

초·중등교육법	지역특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21] ○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교원임용 특례[19①] ○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특성화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원어민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가능

다) 자율학교 지정대상의 특례

자율학교 지정대상에 있어서 지역특구법은 시·군·구립학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초·중등 교육법	지역특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법[61] ○ 관할교육감은 다음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부진아 교육실시학교 -열린교육 및 수준별 교육과정운영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감 인정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학교 지정 특례[19②] ○ 자율학교 지정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적고등학교 -시·군·구립 공립학교 ○ 특구장은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가능

라) 교육특구 지정 현황

2006년 현재 교육특구로 지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4.12.30 지정된 전남 순천시를 비롯하여 경남 창원군, 인천 서구청, 경기 군포시, 경남 김해시, 전남 곡성군, 전남 여수시 등이 있다.

시·군·구	특구명칭	지정일
전남 순천시	순천국제화교육특구	'04.12.30
경남 창원군	창녕외국어교육특구	'05. 2. 2
인천 서구청	서구외국어교육특구	'05. 4.26
경기 군포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05.12. 6

시·군·구	특구명칭	지정일
경남 거창군	거창외국어교육특구	'05.12. 6
경남 김해시	김해평생교육특구	'05.12. 6
전남 곡성군	곡성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06. 2.28
전남 여수시	관광국제화교육특구	'06. 6.20

마) 교육특구 사업 사례2)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영어학습센터 사업, 영어캠프 등 아직은 영어 학습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특구 명칭	특화사업 내용	적용 규제특례
전남 순천 국제화 교육특구	○영어학습센터 사업 ○외국인교원·강사채용 ○영어체험학습장	○학교에 외국인 교원 임용 특례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 (2→3년) 및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경남 창녕 외국어 교육특구	○고교 외국인교원 배치 ○영어체험캠프 운영 ○사이버 외국어 학습 센터 운영 ○교육여건 개선사업	○학교에 외국인 교원 임용 특례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 (2→3년) 및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인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영어마을 운영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차상위계층 및 엘리트교육 지원	○학교에 외국인 교원 임용 특례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 (2→3년) 및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특례 허용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역의 특성상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학할 수

2) 재정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기지정 특구의 규제특례 적용현황 및 특구유형별 규제특례 적용모델」

있는 특례로서의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 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학교신설의 금지 및 규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수도권이라도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내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제24조(수업 등)·제26조(학년제)·제29조(교과서) 및 제46조(수업년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법의 특별법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

영에 관한 특별법과 동시행령상의 규제완화 조항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3>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완화조항

항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설립주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함(제4조)	-
학력인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외국교육기관**의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자 자의 학력을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제11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교과는 국사를 포함)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제9조)
내국인 입학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10% 이내. 신입생이 등교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30%이내. 위원회에서 정함(제7조③)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5% 이내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15%이내(제7조④) - 외국인학교: 2%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함(제7조⑤) -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를 둠(제8조)
잉여금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제12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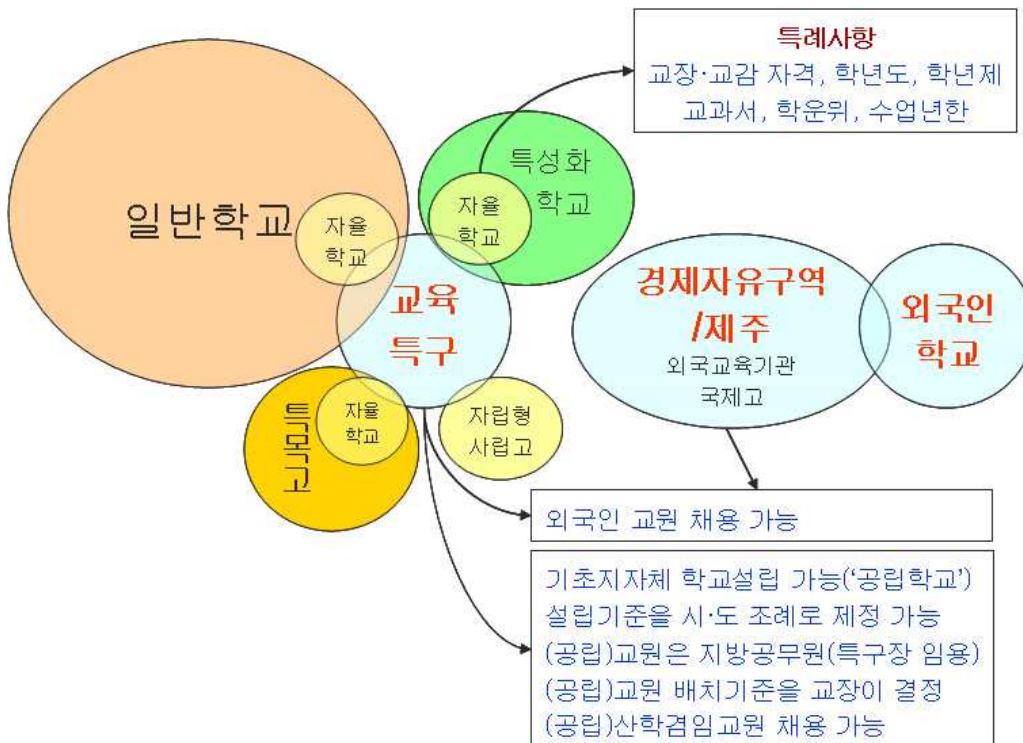
*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대학을 말한다.

3) 외국인학교의 성격

우리나라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로 구분되는 학교로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5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이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III-1] 학교의 종류와 특례

2. 일본

일본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의 기초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로 취급하고 학력인정을 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규제개혁과 구조개혁 특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 규제개혁과 구조개혁특구

1) 구조개혁 특구 제도를 중심으로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가) 일본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 3개년 계획

일본은 2004년까지 3차에 걸쳐 '규제개혁(완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5,000여개 이상의 규제개혁 실적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각의는 지난 2004년 3월 19일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 3개년 계획'을 결정하여 공포한 바 있으며, 이 3개년 계획은 기존의 규제개혁에 더해 민간개방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계획은 경제활성화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달성, 투명성 높은 공정하고 신뢰로운 경제사회의 실현,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확보된 국민생활의 실현, 국제적으로 개방된 경제사회의 실현 등을 도모함과 아울러, 생활자·소비자 분위의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관점에서부터 행정 각 분야에 대해서 민간개방과 그 밖의 규제 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경제사회의 구조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개혁 분야로 IT, 경쟁정책, 법무, 금융, 교육·연구, 의료·복지, 고용·노동, 농림수산업, 에너지, 주택·토지·공공사업·환경, 운송 등 11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있어서 교육·연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립대학법인의 평가에 근거한 조직 개편

- ② 교육주체의 다양화(커뮤니티 학교³⁾의 법제화, 구성원, 운영을 포함한 사립학교심의회의 개편, 차입금에 의한 대학·학부등의 설치등의 용인)
- ③ 정보공개의 촉진(학교법인에 있어서의 재무정보 공개 촉진, 학교법인회계제도 수정, 대학 정보 공개의 촉진, 학교의 자기점검 평가의 촉진)
- ④ 인증평가제도 개선
- ⑤ 복수 평가기관 평가에 근거한 국립대학법인 평가
- ⑥ 교원 정원 외 교원제도(추가배정 교원제도: 加配敎員制度)의 개선 등
- ⑦ 교과서 채택 지구의 정촌 단위의 설정 용인
- ⑧ 18세미만자의 대학입학 허가제도(飛び入學制度) 도입에 관한 긍정적 검토
- ⑨ 국립대학법인에 의한 라이선스 대가로서의 주식 취득 허용
- ⑩ 경쟁적 연구 자금제도 개선

나) 구조개혁 특구제도

규제개혁·민간 개방 추진 3개년 계획에 있어서 한 축이 구조개혁 특구제도이다. 이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활용한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교육·연구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하에서 구조개혁 특구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구조

구조개혁특구란 지방공공단체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조개혁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르는 규제의 특례 조치를 받고, 지방공공단체가 특정의 사업을 실시·촉진하는 것으로서, 교육, 물류, 연구 개발, 농업, 사회 복지 및 그 밖의 분야에서의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국민 생활의 향상이나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 개의 기본적인 축으로부터 성립되었다.

3) 문부과학성에서는 보호자나 지역주민 등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공립 학교의 새로운 구조인 커뮤니티스쿨(학교운영협의회제도)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새롭게 ‘커뮤니티 스쿨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년인 2005년에는 2년을 기간으로 하여 29개의 도도현과 2개의 지정도시에 초등학교 46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6개교, 유치원 1개원, 양호학교 1개교 등 총 70개교를 커뮤니티스쿨을 위촉하였다.

첫째는 '규제 특례 조치의 책정'이다. 즉, 정부는 지방공공단체나 민간 사업자등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정부 내부의 조정을 거친 후, 해당특구에 있어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규제의 특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구조개혁특구 계획의 실시'이다. 이것은 지방공공단체가 특정 사업에 있어서 특례 조치를 활용한 구조개혁특구 계획의 신청을 실시해,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구조개혁특구에 있어서의 사업을 실시 또는 실시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는 '규제 특례 조치의 평가'이다. 정부는 매년 규제 특례 조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2005년도에는 4월부터 9월까지를 제1기로, 10월부터 3월까지를 제2기로 하여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문부과학성에 관계하는 구조개혁 특구 내용

구조개혁특구의 제안 모집은 2005년 6월까지 7회 행해졌으며, 이 제안을 받고 문부과학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23개 항목의 특례 조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3년 4월, 7월, 10월, 2004년 1월, 5월, 10월, 2005년 1월, 5월, 9월에 특구 계획의 인정 신청을 하여 이 특례 조치를 활용한 특구계획이 162건 인정받아서 현재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그 준비와 시행이 시작되어 있다.

제1차 제안: 2002년 10월 결정

- 학습 지도 요령에 의하지 않는 다양한 커리큘럼 편성(구조개혁특구 연구 개발 학교 제도)
- 불등교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탄력화
- IT 등의 활용에 의한 불등교 아동학생의 학습 기회 확대
- 유치원에 만3세에 이르는 연도의 초부터 입원할 수 있는 특례
- 유치원에서의 유치원 원아 및 탁아소아동 등의 합동 활동
- 시읍면 교육위원회에 의한 시읍면 비 부담 교직원의 임용
- 국가의 시험연구기관 등의 시험연구시설 및 대지의 임대 사용 대상 범위의 확대

제2차 제안 : 2003년 2월 결정

- 주식회사에 의한 학교 설치의 용인
- 불등교 아동학생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NPO 법인으로서 일정한 실적을 갖는 경우 학교 설치의 허용
- 교지·교사의 자기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 초등학교와 대학 등의 설치 허용

제3차 제안 : 2003년 9월 결정

- 유치원과 탁아소 보육실의 공유화 특례
- 외국 고등학교 유학 시에 있어서의 인정 단위수 상한의 완화(30단위→36단위)
- NPO 법인에 의한 학교 설치의 경우 교원 배치의 탄력화
- 전일제 과정에 재적하는 불등교 상태에 있는 학생에게의 통신제 과정에 의한 학습의 적용
- 대학 설치 기준의 완화(운동장 설치의 탄력화)
- 대학 설치 기준의 완화(여유 공간 확보의 탄력화)

제4차 제안 : 2004년 2월 결정

- 교원의 특별면허장 수여 권자로서 특구 시읍면 교육위원회 추가
- 유치원과 탁아소 보육실의 공유화와 관련되는 원사(園舎) 면적 기준의 특례
- 인터넷 등만을 이용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에 있어서의 교사 등 시설과 관련된 요건의 탄력화

제5차 제안 : 2004년 9월 결정

(특구의 특례 조치의 추가는 없음)

제6차 제안 : 2005년 2월 결정

-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의 제휴·협력에 의한 공사협력학교의 설치
- 교지 및 교사의 자기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 전수학교 등의 설치

제7차 제안 : 2005년 10월 결정

(특구의 특례 조치의 추가는 없음)

2) 학교 설립주체에서의 특례

일본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설립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학

교법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었을 뿐이었다(학교교육법 제2조 제1항). 또한, 국가가 설치한 국립학교,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구분이 명확하였다(동조 제2항).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원칙들에 있어서 융통성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설치회사, 공사협력학교제도 등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과 아울러 기존의 학교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규정들도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가)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 운영 검토

일본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법인 이외의 민간주체에 의한 학교의 설립·운영은 회계제도에 의한 정보공시제도, 제3자 평가에 의한 질의 보장 등을 전제로 하고, 교육의 공공성, 안정성, 계속성의 확보에 유의하면서, 특히 대학원 수준의 사회인을 위한 직업실무교육 등의 분야의 학교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에는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운영은 구조개혁특별구역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에 의한 학교 설치는 제2차 제안에서 제기되어, 2003년 2월 수용이 결정됨으로써 현재 구조개혁특별구역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불등교 아동학생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NPO 법인으로서 일정한 실적 을 갖는 경우 학교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학교 설치를 새로운 학교의 관리 운영 방법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특별구역 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나) 학교설치회사 제도

위에서 살펴본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의 대표적인 예가 학교설치회사제도의 도입이다. 여기서 학교설치회사란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즉, 일본에 있어서는 구조개혁특구의 하나인 교육특구에 있어서 2003년 2월 제2차 제안

에서 수용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에 의한 학교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 있어서 학교설치회사 제도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들 회사들은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설치회사연맹을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동 연맹에 가입한 회사는 16개로서 대학·대학원 설립운영법인이 5개, 고등학교 설립·운영법인이 10개, 그리고 중학교 설립·운영법인이 1개교이다.

해당 학교설치회사와 그 설치·경영 학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株式會社朝日學園 (朝日塾中學校)
- 株式會社아토마크 러닝(美川特區 아토마크 國際高等學校)
- 株式會社 위츠츠 (위츠츠 靑山學園高等學校)
- 株式會社榮光 (日本教育大學院大學)
- 株式會社 에데유데코지야관(輝學園高等學校)
- 株式會社그로우비스(그로우비스經營大學院大學)
- 新教育시스템株式會社 (사쿠라國際高等學校)
- 株式會社淸風學園 (勇志國際高等學校)
- 디지털 할리우드株式會社 (디지털 할리우드大學·大學院)
- 株式會社東京리걸 마인드(LEC東京리걸 마인드大學·大學院)
- 株式會社日本教育工房 (北海道藝術高等學校)
- 株式會社하모니츠클 (위자스高等學校)
- 株式會社비즈니스 브레이크 쓰루(비즈니스 브레이크 쓰루大學院大學)
- 株式會社후리 다무(구마모도淸陵高等學校)
- 르네상스·아카데미株式會社 (아카데미 高等學校)
- 株式會社麗光學園 (요오기高等學校)

학교설치회사연맹은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차세대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 연구 및 학교 경영의 본연의 자세를 탐구하고 실천하며, 학교설

치회사 전반의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지역 사회·지역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의 국제 경쟁력의 유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연맹이 전개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설치회사가 실시하는 학교 교육, 연구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상호 원조 및 정보교환
- ② 학교설치회사가 실시하는 학교 교육, 연구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조건 정비의 검토 및 제언
- ③ 학교설치회사가 실시하는 학교 교육, 연구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일반에의 홍보
- ④ 학교설치회사와 관련되는 관계 제 기관(지방공공단체, 중앙 관청, 각 교육기관, 경제 단체, 제삼자 평가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⑤ 그 외, 연맹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인데 이들에게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일정한 구역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은, 현재의 학교법인제도로서는 하기 어려운 분야의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공사 협력학교제도(公私協力學校制度)

공사 협력학교제도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의 학교로서 이른바 공설·민영방식의 학교를 뜻한다. 이러한 공사협력학교제도는 구조개혁특별구역 사업의 제6차 제안에서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의 제휴·협력에 의한 공사 협력 학교의 설치'가 제안되고 그것의 수용이 2005년 2월 결정됨으로써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의 시행을 위한 계기는 중앙교육심의회답신 '이후의 학교 관리 운영 방식에 대하여'(2004년 3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동 답신에서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로서 공설민영방식의 학교가 다양한 학교의 설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이 답신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공사협력학교는 2002년 기준으로 2개 현(縣), 3개 학교법인, 4개 학교(소학교 2,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설치 당시의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지원 양식을 보면, 폐교된 공립학교의 교지 및 교사를 무상 차용 또는 구매하

는 경우(차용 1개학교법인 2개교, 구입 1개교) 그리고, 현이 조성·건설한 교지 및 교사를 무상으로 차용(1개교)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제도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일정한 지원과 관여 아래, 민간의 기술과 인재를 활용하면서 지역의 교육적 요구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설민영방식의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의의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응하는 것이 곤란한 공립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공부를 활용하는 것과 공립학교의 설치·관리에 요구되는 공적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사협력학교법인’에 있어서도, 그 취지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설치 의도 하에서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고 유연하며, 이에 더해 학생·보호자의 만족도가 충분히 높은 학교를 유도하고 있다.

3) 학교운영의 특례 및 자율권의 허용

가) 구조개혁특구 내 학교법인 설립조건 완화제도

학교법인 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구조개혁특구에 있어서는 특례조치의 일환으로서 교지·교사의 자기소유 요건에 대한 완화가 인정되고 있다. 즉, ‘학교법인의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변경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2004년 문부과학성고시 제47호, 3월 31일 공포, 4월 1일 시행), 국가 등으로부터 차용 그리고 민간으로부터의 차용으로서 개설년도 이후 20년 이상의 사용이 보증되는 경우에는 종래의 기부행위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지·교사의 자기소유 요건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하여 학교설립·경영에 있어서 유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차용을 통한 학교의 설립·경영을 허용함은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전제 아래에서 보다 많은 재원을 학교교육으로의 투자에 끌어들이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학교교육의 안정성, 계속성 확보를 전제로 하여 전국적인 완화에

대해서는 특구의 상황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구조개혁특구에서의 자율 경영 등 특례' 인정제도

구조개혁특구에서의 자율 경영 등 특례 인정제도는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구역에서 신청을 받아 학교경영 등에서의 자율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일체화, 3세 아의 유치원 입학 특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지역에서 자율학교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제출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대학교육의 국제화

1) 국제적인 대학의 질보증

고등교육을 둘러싼 세계적 정세는, 학생이나 교원 교류의 진전, 전문직 인재의 각국간 이동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인재 유동성의 고조와 함께, 고등교육 기관 스스로도 해외 분교의 설치, 외국의 교육기관과의 제휴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거나 e-러닝 등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대학 간의 경쟁과 협동이 진전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가운데, 일본에 있어서는, 2004년 3월에 학식 경험자등에 의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에 의해서 「국경을 넘어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질 보증에 대해」가 정리·발표되었다.

이 제언을 근거로 하여 2004년 12월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실시해(2004년 12월 13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 개정), 이른바 외국 대학 등의 일부 학교 중 해당 외국의 학교 교육 제도에 대해 해당 외국 대학의 일부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교육 시설로서,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것을 수료한 사람에게 일본 대학원등에의 입학 자격을 인정하거나 일본 대학과 전학, 편입학, 단위호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학이 외국에 있어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대학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대학의 일부로 자리 매김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전술한 것과 같이 학교교육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일본 내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국의 대학 정규 과정임과 아울러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는, 일본 내의 교육제도와외 교류 즉, 대학원입학자격 부여, 단위의 호환 등이 가능해 졌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0조의2는 대학(단기 대학 제외)의 전공과 또는 대학원에의 입학에 관계되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하나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6년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이외에 “외국의 학교가 실시하는 통신교육에 있어서의 수업 과목을 일본에 있어 이수하는 것으로써 해당 외국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의 대학과정을 갖는 것으로서 해당국의 교육제도 내에서 자리 잡은 교육시설로서 문부 과학 대신이 따로 지정하는 것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추가시켰다.

또한,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70조의 8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의 대학, 대학원 또는 단기 대학의 과정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학교 교육 제도에 대해서 자리 매김된 교육 시설로서, 문부과학대신이 따로 지정하는 것의 해당 과정에 재학한 사람은, 전학하려고 하는 대학, 대학원 또는 단기 대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해당 대학, 대학원 또는 단기 대학에 전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학 범인화 정책 추진과 성과

1) 대학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 개혁

일본 내각은 2001년 7월에 “대학이 바뀌면 일본도 변한다”라는 슬로건 하에 “대학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 개혁”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만들기

- 평가에 기초한 경쟁원리의 철저
- 국립대학에 민간경영원리 도입을 통한 새로운 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

- 대학의 신산업 창출역할 강화
- ② 인재대국의 창조
 - 세계를 통용하는 전문가 육성
 - 사회·고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③ 도시·지역의 재생
 - 도시·지역과 일체로 된 대학의 전환

후술할 국립대학 구조개혁안 즉, 국립대학 법인화는 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대학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만들기’의 세부 내용의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술한 개혁안에 있어서 가장 가시적인 핵심개혁안이라 할 것이다.

2)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 법인화는 구체적으로 ① 국립대학을 분야별로 재편·통합하는 과정에서 대학숫자를 대폭 줄이고, ② 국립대학에 민간적 발상의 경영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며, ③ 제3자에 의한 대학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점 배분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학의 약 5%를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2003년 10월 국립대학법인법 시행을 통해 2004년 4월 국립대학법인 설립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114개 기관(국립대학 99교, 대학공동이용기관 15개)이 93개(국립대학법인 89개, 대한공동이용기관법인 4개)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의 법인화’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권 확보, ‘민간적 발상’을 활용한 경영방법 도입, ‘외부인사 참가’의 운영시스템 제도화, ‘비공무원형’의 탄력적인 인사시스템으로의 이행, ‘제3자 평가 도입’에 의한 사후 평가 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개별 대학 단위의 법인화를 통한 운영의 자율성 확보

- 대학 운영의 자율성·자주성 제고 및 이와 함께 자기 책임의 명확화 도모
- 대학 상호간의 경쟁적 환경 양성 및 대학의 개성화
- ② 책임 경영 체제의 확립
 - 외부 이사를 포함한 임원회 설치 및 총·학장 중심의 경영 체제
 - 예산 및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 확보(대학 자체의 자율 운영)
 - 개별 대학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심의기관의 구성·운영
- ③ 교육과정과 교육·연구에 대한 심의 담당의 ‘교육연구평의회’
 - 예산 작성 등 국립대학법인 경영 심의 담당의 ‘경영평의회’
 - ‘대학 외부 관계자의 참가·기획’에 따른 운영 시스템 제도화
 - 대학 외부의 전문적인 식견을 경영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이사·감사 등의 임원으로 등용
 - 대학 경영에 국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평의회 위원의 반수 이상을 외부자로 임명하는 방식 활용
 - 총·학장 선출 과정에 학내외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경영평의회외의 외부 위원과 교육연구평의회외의 대표자 사이에 동수로 구성된 총·학장 선고회의(選考會議)를 통해 총·학장을 뽑는 제도 활용
- ④ 국가공무원법 체계에서 벗어나서 탄력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
 - 교직원 인사를 경쟁적 환경 속에서 탄력 운용
 -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함.
 -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 형태 혹은 급여 체계 및·근무시간 체계의 도입
 - 겸직·겸업을 활용한 산학연계·제휴의 추진, 관리직에 외국인 등용 등
- ⑤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원을 재조정·배분하는 방식 실천
 - 대학 운영의 자율성·자주성을 보장하는 만큼 엄격한 평가도 함께 요구.
 - 각 법인은 6년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목표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중기 목표 및 중기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의 실시를 원칙화함
 -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등 제3자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자원 배분
 - 제3자 평가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교육적 투명성과 사회에 대한 공헌 제고

이와 같은 국립대학법인화 작업의 의미는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국가 조직 체계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국립대학들이 더욱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연구를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확대함에 의미가 있다. 또한, 법적 지위 측면에서는 기존의 국립대학이 국가예산제도와 국가공무원제 중심의 행정 조직 상 영조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졌다면, 법인화된 국립대학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국가와 독립된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반민영화된 독립법인이라 할 것이다.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1) 일본 내 외국교육기관 개황

가) 일반 학교와의 관계

일본에 있어서 학교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들은 '국민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특히 민족학교들이 일본의 '국민교육'을 전제로 정해진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 문부 과학성 검정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문부 과학성이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민족학교도 통상의 일본 내 학교들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일본의 학교가 실시하는 보통 교육은 실현될 수 있어도, 모국어의 수업 시간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민족 교육의 실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와는 다른 외국인학교 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나) '외국인학교법'의 제정 시도

현재 일본에는 외국인학교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 그러나 1968년 3월 12일에 '외국인학교법(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 또한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 관계법률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 법률로 성립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1968년 3월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외국인학교법(안)'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조는 동법률안의 목적을 “외국인학교의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 국제적인 우호 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자주적인 교육이 자국의 이익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었다. 그러면서 제2조는 외국인학교를 “오로지 외국인(일본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① 1년 이상의 수업 연한, ② 정령으로 정하는 수업시수 이상, ③ 교육을 받는 사람이 상시 40명 이상으로서 조직적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외국인학교”로 정의하고 있었다.

한편, 제4조는 설치자와 관련하여 설치자의 조건을 ① 외국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기초를 가지는 것, ② 경영자가 외국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는 것, ③ 경영자가 사회적 신망을 가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동법률안 제6조는 외국인학교의 설치, 폐지, 설치자의 변경 및 목적의 변경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이와 함께 관할청을 원칙적으로는 문부대신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 외국인학교 실태

현재,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약 120개 정도의 외국인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학교 및 조선학교가 가장 많고, 그밖에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핀란드어 등 다수의 언어별 외국인학교가 있다.

한편, 일본의 외국인학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한국학교, 조선학교, 중화학교와 같이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학교로서 해당 민족의 민족적 정서를 강조하는 민족학교이며, 다른 하나는 특히 미국·영국 등 서구 중심의 학교들로서 다국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이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학교는 중앙정부에 의한 감독이 아니라 도도부현의 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는 관계로 전국적인 실태 파악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실태와 관련하여 關西(칸사이) 지역의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본내 근기(近畿)지역에 해당하는 2府 4縣에는 전체적으로 47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다.

(가) 효고현(兵庫縣)

- 가나 디 안·아카데미(カナディアン・アカデミー) : 1913년 개교
- 코베 중화 동문 학교(神戸中華同文学校) : 1889년 개교
- 코베 독일 학원(神戸ドイツ学院) : 1909년 개교
- 성 미카에루 국제 학교(聖ミカエル国際学校) : 1946년 개교
- 마리스토 국제학교(マリスト国際学校) : 1951년 개교
- 르텔 국제학원·노르웨이 학교(ルーテル国際学園・ノルウェー学校) : 1949년 개교
- 효고조선학원 13개교(兵庫朝鮮学園 13校)

(나) 오사카부(大阪府)

- 학교 법인 천리 국제 학원(学校法人千里国際学園) : 1991년 개교
- 오사카 인터내셔널 스쿨(大阪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 : 1991년 개 교
- 오사카 중화 학교(大阪中華学校) : 1946년 개교
- 오사카 조선학원 13개교(大阪朝鮮学園 13校)

(다) 교토부(京都府)

- 교토국제학교(京都国際学校) : 1957년 개교
- 칸사이 프랑스 학원(関西フランス学院)
- 교토한국학원(京都韓国学園) : 1946년 개교
- 교토조선학원 5개교(京都朝鮮学園 5校)

(라) 시가현(滋賀縣)

- 핀란드 학교(フィンランド学校)
- 시가조선학원(滋賀朝鮮学園) : 1960년 개교

(마) 나라현(奈良縣)

- 칸사이 크리스찬 스쿨(関西クリスチャンスクール)

- 나라조선학원(奈良朝鮮学園) : 1969년 개교

(바) 와카야마현(和歌山縣)

- 와카야마조선학원(和歌山朝鮮学園) : 1958년 개교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가) 법적 지위 및 설립주체

일본에서 주로 의무 교육 연령에 상당하는 외국인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시설을 ‘외국인학교’라고 하며, 사립 각종학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학교교육법 제83조 제1항). 특히, 이러한 외국인학교 가운데,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학교를 ‘국제 학교’라고 한다. 한편, 외국인학교는 학교법인립(學校法人立), 준학교법인립(準學校法人立), 재단법인립(財團法人立), 무인가교(無認可校) 등으로 구분된다.

나) 설립주체 및 승인주체

일본은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본에 있어서 외국인학교는 학교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취급됨이 원칙이므로 고등학교이하의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급에 있어서는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학교교육법 제83조 제2항). 이와 같은 절차는 일본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 학교법인 또는 준학교법인의 설립 후 추가적 요건의 충족을 통해 사립 각종학교로의 인가를 얻게 된다.

다) 설립기준

일본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 및 절차는 각종학교의 그것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4년 6월 21일 문부과학성령 제35호로 최종 개정된 ‘각종학교규정’은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전술한 것과 같이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무인가교도 있으므로, 이하의 조건들을 충족시키 않는다고 외국인학교의 설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인가교라는 법적 지위를 지닌 상

태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동 규정 제3조는 수업시간과 관련하여, 각종학교의 수업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간단하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술, 기예 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3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조는 수업시수와 관련하여 각종학교의 수업시수는, 그 수업 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1년간에 걸쳐 6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1년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업 기간에 따라 수업시수를 줄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5조는 각종학교의 수용 정원을 교원수, 시설 및 설비 그 외의 조건을 고려하고, 적당한 수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에 더하여 각종학교의 동시에 수업을 실시하는 학생수는, 40명 이하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조는 입학 자격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종학교의 경우 과정에 따라 일정한 입학 자격을 정해 이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장, 교원, 위치, 시설·설비 등의 기준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각 도도부현은 위 각종학교규정에 근거하여 각기 독자적인 외국인학교 및 관련 법인의 인가를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 먼저, 외국인학교의 인가기준으로는 (1) 본국 정부로부터, 학교로서의 인가를 받아 그 인가 내용을 준수한 교육이 실시될 것, (2) 학교의 경영이 현저하고 영리 기업적이지 않은 것, (3) 학교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4) 학교 규모에 어울린 필요한 학생수의 확보에 대해서, 확실한 예상이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즈오카현(靜岡縣)의 “외국인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각종학교 설치인가 등 심사기준”(2004年3月19日 제정), 제2조).

한편, 외국인학교 중 가장 많은 설립형태를 띠고 있는 준학교법인의 설치와 관련하여서 시즈오카현(靜岡縣)의 “외국인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 각종학교를 설치하는 준학교 법인 기부 행위 인가 등 심사 기준”(2004年3月19日) 제2조는 외국인학교를 설치하는 준학교 법인의 설립 기준으로 1)설치하는 학교의 수용 정원은 80 사람 이상인 것, 2)학교의 경영이 영리 기업적이지 않은 것, 3)학교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대학의 분교와 관련해서는 2005년 4월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대학설치 기준, 단기대학설치기준, 전문직대학원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3) 내국인 입학여부

외국인학교는 일본어가 아닌 외국어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교육과정 등에서 내국 학교와 차이를 보이는 바, 내국인에게 내국학교에의 입학 대신에 외국인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의 입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바, 그 기준을 해외 거주 기간보다는 외국어 능력을 우선시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학교마다 기준이 상이하나, 국제 학교(International School)의 경우 외국거주 기간이 아닌 외국어 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또한, 내국인 입학비율도 개별학교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다.

다만, American School의 경우에는 영어교육학교에 3년 이상 재적하거나 입학심사시 어학능력에 대한 성적증명이 가능한자, 일본인 귀국자는 귀국 1년 이내 출원한 자, 양친 가운데 한 사람의 영어 회화력이 충분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KOTRA, 2004: 21). 이와 같이 일본도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예외적으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같이 다소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부모와 관련된 해외 거주기간 보다는 외국어 능력을 우선시 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 있을 것으로 본다.

4) 학력인정

전술한 것과 같이 학교교육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일본 내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국의 대학 정규 과정임과 아울러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일본 내의 교육제도와외 교류 즉, 대학원입학자격 부여, 단위의 호환 등이 가능해 졌다. 또한, 이에 더하여 외국 고등교육기관을 인터넷 수업으로 수료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인정을 취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등학교이하의 외국인학교 졸업 경우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외국인학교의 법적 지위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고등교육 단계와 같이 일본 내 교육제도와와의 교류가 아직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외국인학교의 학력이 절대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일본대학이, 일본에 있는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입학 자격을 인정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문부과학성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입학 자격 여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국내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일본 내의 교육제도와와의 교류 즉, 상급학교 진학을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즉, 일본은 종합규제개혁회의 제1차 답신은 '인터내셔널 스쿨 졸업자의 진학 기회의 확대(2002년 조치)' 등을 제안한바 있으며, 이후인 2003년 8월 6일에 문부 과학성은, 대학 입학 자격의 탄력화(안)을 발표해, 그 중에 외국인학교와 관련하여 (1) 서구 민간 평가 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터내셔널 스쿨, (2) 본국에서 해당국의 정규의 과정과 동등으로서 자리 매김 되고 있는 것이 각국 대사관등을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 (3) 그 외의 외국인학교의 3종으로 나누어 (1) 및 (2) 에 대해서는 문부 과학 대신이 학교 단위로 해당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인정하고, (3)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해당 외국인 졸업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인정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의 일본의 주된 흐름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인터내셔널 스쿨 졸업생에 대해서는 일본학교 졸업생에 준하는 취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 국제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외국인학교 졸업 후 바로 본국 또는 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나마 학력인정의 여지를 부여함으로

써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외 국민들의 기대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외국대학의 분교에 학력인정을 통한 자국 내 교육제도와와의 교류 기회를 부여함은 해외로부터의 학생 유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⁴⁾

5) 수업료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

현재 일본에 있어 외국인학교의 수업료는 개별학교의 자율 책정이 원칙인데, 보통의 국립학교에 비하여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같은 외국인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 간에 차이가 많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외국인학교의 수업료는 US\$ 기준으로 12,500에서 23,700 정도이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학교 및 중학교와 같이 의무교육 단계의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관할청 단위 특히 시구정촌의 기초자치단위에서 외국인학교 재학생을 둔 외국인 학부모에 대해 연간 평균 20,000엔(12,000엔에서 19,200엔 수준)의 자녀교육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上尾市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월 7,500엔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上尾市外國人學校兒童生徒保護者補助金交付要綱).

6)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일본은 사립외국인학교의 교육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재학 중인 학생들

4) 2003년도에는 국립대학에의 수험 자격이나 외국인학교에의 기부금 공제라고 하는 문제가 일본 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는데, 당시 일본 정부의 대체적인 태도는 “인터내셔널 스쿨은 인정하지 않, 아시아계 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문부 과학성은 2003년 3월 6일, 2004년도부터 외국인학교 중 인터내셔널 스쿨 16개교에 한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준다고 발표하며, 이는 조선학교, 화교 학교 등 상당수의 아시아계 외국인학교를 그 대상에서 배제하였던바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을 샀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다시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위의 ‘방침’을 철회하고 민족학교를 포함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바 있다. 그러나, 문부 과학성은 3월 31일, 다시 구미계의 인터내셔널 스쿨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만을, 면세 조치가 취하여지는 ‘특정 공익 증진 법인’에 추가함으로써, 또 다시 외국인학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조선학교나 한국 학원, 중화학교, 브라질인 학교 등을 자의적으로 배제하여 다시금 이슈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서구유럽 등의 교육평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터내셔널 스쿨을 그렇지 않은 외국인학교와 차별적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기조가 일본 교육당국에 상당함을 시사한다.

의 수확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정상적 경비에 대하여 보조제도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2000년도에 총 15개교에 219,065천엔이 보조되었다.

한 예로서 오사카부(大阪府)는 관내에 소재하는 사립 각종학교의 외국인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학생의 수확상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나 외국인학교에 있어서의 교육 조건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다만, 각 학교 법인 및 학교에 있고, 학교 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정한 학생수가 재적하지 않는 경우, 재무 상황의 지극히 좋은 경우, 다른 정상적 보조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는 외국인학교의 지출 중 인건비, 교육 연구 경비, 관리 경비, 차입금등 이자를 대상으로 있다. 한편, 보조금 배분 기준과 관련해서 각 학교 법인에 대한 보조액은, 학생 한 명당의 보조 단가를 기초로, 학교에 있어서의 학생 인원수, 정원 초과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 있어서의 재적 학생수) × (학생 한 명당의 보조 단가)를 기준으로, 2004년도에는 학생 한 명당의 보조 단가를 77,000엔으로 하였고, 정원을 초과 학교의 경우에는 일정율의 패널티를 설정하였다(“2004년도 오사카부 사립 외국인학교 진흥 보조금 배분등의 개요”).

7) 교육과정과 교직원 등

외국인학교의 경우, 각종학교로서 일반학교와 같은 커리큘럼, 학생 선발과 교사 임용, 등록금 책정 등에 있어 강력한 규제는 없음. 각종학교규칙은 수업기간, 수업시수, 교원의 최저수, 시설·설비의 최저기준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로서 교직원면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교원임용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다. 각종학교규칙 제8조는 각종학교의 교원에게 그 담당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 기술, 기능을 보유할 것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교직원면허법의 대상이 되는 교직원에게 각종학교의 교원은 배제되며(제2조), 각종

학교규칙 제8조는 각종학교의 교원에게 그 담당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 기술, 기능을 보유할 것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별히 외국인 교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각종학교규칙 제8조를 살펴보면 먼저 제1조는 각종학교에는 과정 및 학생수에 따라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 최소한을 3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는 각종학교 교원은 그 담당 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 기술, 기능 등을 갖춘 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고 규정함에 더하여 제3조에서 각종학교의 교원은 전한의 지식, 기술, 기능 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국적 및 자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다.

8) 영리행위와 과실송금

가) 교육관계법상 실태

일본은 외국인학교의 승인 조건의 하나로 “학교의 경영이 현저하고 영리 기업적이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비록 외국인학교라고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영리법인의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그로 인한 과실송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외국인학교는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있다.

물론 전술한 것과 같이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의하여 학교의 설립 주체를 특구에 있어서 만큼은 주식회사가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개방과는 관계가 없는 내국학교에 한정되는 것이다.

나) 상법상 특례

앞에서 살펴본 경우와 달리 영리법인이 세운 학교가 있다. 다만, 이 예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설립·운영이 아니라 상법에 의한 특례로 봄이 합당하다. 미국 템플(Temple) 대학의 분교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Temple University Japan⁵⁾이 그것이다. 이 대학은 현재 유한회사의 형태로 재무성의 회사설립인가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형태의 외국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이 대학은 문부과학성과는 직접

5)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적인 관련이 없어 문부과학성의 지도·감독권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한편, 템플대학은 영리법인인 유한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송금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198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는 의도적으로 균형예산을 취하고 있으므로 잉여금에 대한 본국 송금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템플대학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대학에는 일본국민과 외국인 모두 대학 자체의 입학시험을 통해 자유롭게 입학이 가능하다. 학생정원도 별도로 국가 등에 의해 규율됨이 없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책정하는바, 현재 약 2,000여명의 재학생이 있다. 수업료는 전일제 학생을 기준으로 연간 120만엔 정도이다.

이 대학의 졸업은 미국 본교에서는 학위로 인정되지만, 일본 내에 있어서 대졸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술한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2004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는 대학원 입학 자격 및 학점 교환이 인정되고 있으나, 학위 자체를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3. 중국

중국의 규제완화와 교육산업육성정책은 매우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사례가 있다. 특히 대외 정책을 중심으로 합작학교 등의 학교유형과 운영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규제완화

중국에서의 교육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80년대 개혁 개방이후 교육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교육문호를 개방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방은 2003년에 시행된 합작학교 설립조례와 2004년에 발효된 조례에 대한 시행방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외국과 합작한 학교가 2004년 당시 700여개로

나타났다. 지역을 보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합작국가를 보면 미국이 154개교, 호주 146개교, 캐나다 74개교, 일본 58개교, 홍콩 56개교, 한국 12개교 등이다. 학교유형을 보면, 고등학교 40개교, 직업학교 69개교, 대학 151개교, 대학원 74개교 등이다.

중국은 특히 대학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른 각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흐름 속에서 교육분야도 본격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일류수준 대학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고등교육인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학비를 받는 민영화, 시장화의 방향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이경자, 2006: 59-67).

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1) 유형

중국에는 세 종류의 국제적 학교(international school)⁶⁾가 존재한다.

가) 제1유형: 외국인학교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일반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인학교를 중국에서는 '섭외학교'라 한다. 현재 이러한 섭외학교는 2005년 3월 현재 총 71개교이다(<http://www.jsj.edu.cn/mingdan/010.html>). 북경 소재 국제학교를 보면, 북경한국국제학교, 북경대한학교, 북경몬테소리유아원, 북경경서학교, 북경영국국제학교(BISS), 북경협력구제학교, 북경순의국제학교, 북경요중국제학교, 북경용학구제학교, 북경교지박인국제유아원, 북경중관춘국제학교, 북경영국학교, 북경이튼국제유아원, 북경David 영국국제학교, 북경경미국제학교, 북경 Australia국제학교 등이 있다.

6) 여기서 국제적 학교라 함은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국제학교를 통칭하는 의미로 썼다. 중국에서 국제학교라는 명칭은 영국국제학교와 같은 외국인만을 위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도 쓰고, 내국인중심의 기존학교 안에 국제반을 설치한 경우에도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다.

<표 III-4> 중국의 외국인학교 사례

학교명	교육방식	학비(US\$)	학제	위치
Concordia Int'l School Shanghai	미국식	수:12,500~15,000 기:6,500 등: 200	유·초·중등	푸둥 (상하이)
Shanghai American School	미국식	수:11,500~20,000 등:250	유·초·중등	푸둥, 푸시 (상하이)
Oriental Pearl College	미국식	수:7,200~7,800 입:1,300 운:700 숙:3,800	초·중등	동관 (광둥)
Int'l School of Beijing		수:14,300~16,960 등:200 도:4,000	유·초·중등	순위 (베이징)
Shanghai Singapore Int'l School	싱가포르	수:8,000~12,000 등:200	유·초·중등	밍항 (상하이)

주) 수:수업료, 등:등록금, 기:기부금, 입:입학금, 도:도시세, 숙:기숙사, 운:운영비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p.18. 원자료 중 학제에 '고'는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여기서는 '중등'으로 포괄하였음.

나) 제2유형: 합작학교

외국의 교육기구와 중국의 교육기구(이하 '합작학교 설립운영자'라 함)가 중국 내에서 중국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구를 합작 설립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합작학교'라 부른다.

합작학교 설립 범위를 보면, 법적으로 모든 종류의 학교유형에서 합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격을 가진 학교는 외국과의 합작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합작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시하는 합작 권장 영역이 있다. 중국정부는 자신들에게 특히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인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합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세계수준에 뒤떨어진 학문 및 기술 분야의 합작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합작학교 운영사례

▶ 파리엔 Maple Leaf학교(고등학교 과정)

이 학교는 중국과 캐나다 합작학교이다. 학교는 초·중·고를 모두 갖춘 12년 일관제 학교이다. 초·중·고 모두 중국어와 영어의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캐나다의 자연과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르다. 고등학교는 캐나다 교재를 가지고,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캐나다 학적에 등록되어 졸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다. 결국 이 학교는 중국의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많은 수가 캐나다 등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 북경제2외국어대학 세계교류영어학원(학사과정)

이 학교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과 캐나다세계교류센터가 합작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외국인이 영어로 진행하며, 졸업 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의 합작학교(석사과정)

이 학교는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이 합작하여 중경대학 내에 설치한 자동차공정을 전공하는 대학원과정이다. 1년 학비는 1만 2000달러이며, 졸업 후에는 미시건 대학의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수업은 미시건 대학의 교수들이 중경대학에 와서 하며, 미시건대학과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다) 제3유형: 외국인 유학학교

중국 내국인이 설립한 학교로서 다국적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중국 내국인들이 다니는 일반학교이면서 국제부(international division)나 국제반을 설치하여 외국 국적 학생을 모집하는 국제학교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외국인을 주된 학생으로 입학시키는 학교도 생겨났다. 북경에서는 2003년부터 유아원과 중·소학 등 모든 중국

학교에 외국인 자녀의 취학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였다. 북경에 장기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 자녀취학문제를 해결하여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전에는 외국인자녀가 시 교육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회문중학·인민대학부속중학 등 몇몇 학교에만 취학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비준이 필요없이 원하는 학교를 자유롭게 취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5년 8월에는 북경에 외국 시민권 없는 중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낙성국제학교가 설립되었다.

2) 설립

대체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신청서 제출 → 지방정부 교육행정부의 심사 → 중앙정부(국무원 교육행정부)에서의 승인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합작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승인과정, 설립절차, 관련법령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 승인과정

합작학교의 경우 4년제 대학 본과이상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합작,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자학교시 보조학교, 학원, 유치원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성정부(자치구, 직할시 포함; 우리의 도에 해당) 교육행정 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나) 설립절차

합작학교 설립은 '설립 준비'와 '정식 설립'의 두 절차로 나뉜다.

먼저 설립 준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 준비를 신청하면, 심의 비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45(업무)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을 하면 설립준비 비준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하면 응당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비준이 결정되면 3년 내에 정식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3년이 초과하면 중외합작학교 설립운영자는 재신청하여야 한다. 설립준비기간에는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설립준비를 완결하고 정식설립을 신청하려면 정식설립신청서, 설립준비비준서, 설립

준비 상황보고, 중외합작학교 설립운영기구의 정관, 첫 번째 이사회·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명단, 중외합작학교설립운영기구 자산의 유효증명문서, 교장 혹은 주요행정 책임자·교사·재무 회계원의 자격증명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합작학교 설립운영기구의 정식설립을 신청하면 심의비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합작학교 설립운영기구의 경우 심의비준기관은 6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평가논의한다. 합작학교 설립운영기구는 설립허가증을 취득한 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외국합작학교 설립운영조례’(이하 ‘합작학교법’이라 함)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부 관우개관외적인원자녀학교적 집행관리관법’(1995년 4월 공포, <http://www.jsj.edu.cn/zhengce/002.html>)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설립주체

합작학교의 설립주체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합작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인이어야 하지만, 외국교육기구와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의 고등학교가 설립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합작학교 설립운영기구는 법인자격을 구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외국 의 종교관련 조직·기구·학교·교직원 은 중국 내에서 합작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앞서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제시했듯이 외국인학교의 설립은 중국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기구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독자투자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유학학교는 내국인으로 한정된다.

4) 설립기준

합작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문서를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외합작학교 설립·운영자, 명칭, 교육목표, 설립·운영의 규모·형식·조건, 내부관리체제, 경비조달, 관리사용, 합작기한, 쟁의해결방법, 자산내원, 자금액수, 유효증명 및 유효증명문서, 재산권의 명기, 투입한 자금의 15%이상의 착수자금 입금증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학교급

외국인학교는 중등이하의 학교만이 가능하지만 합작학교는 전 학교급, 심지어 학원도 가능하다.

6)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 여부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에 대해 관련법규에서 명문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푸둥신구는 2003년 9월 외국교육기관의 단독투자 및 투자이익 본국송금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영국사립 Dulwich Collge를 유치한 바 있다.

합작학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 구자역(2004)은 “법률에서는 잉여이익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합작학교법 제37조에서 “중외합작학교설립운영기구의 존속기간에는 모든 자산은 중외합작학교설립운영기구가 법에 따라 법인 재산권을 향유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점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재산권을 존중하고 있다. 한편, 청산시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잉여 재산은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고 할 뿐 명확하게 과실송금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7) 내국인 입학

외국인학교에 대한 중국 교육부의 관리규정에 내국인 입학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CISS 등 일부학교의 경우 지방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KOTRA, 2004: 19).

설립주체만 다를 뿐 외국인학교와 사실상 다르지 않은 낙성국제학교와 같은 학교에는 중국 학생들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이와 비슷한 학교로서 현재 수십 곳에 이르는 중국내 사립학교들이 '국제학교'를 표방하면서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동북희망국제학교'(http://dbxw.com)로서 유·초·중·고교 15년 일관제 교육을 실시하는 대규모의 사립 기숙학교이다. 일부 외국 유학생도 취학하고 있다.

합작학교에서는 “중국국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고 국외학생모집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고 하여 사실상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8) 교육과정 및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 설치 및 교재, 교학계획은 기본적으로 해당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관리규정 제9조). 중국 정부에서는 이들 국제학교 학생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을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관리규정 제11조). 실제 많은 수의 외국인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박종배, 2005). KOTRA의 자료(2004: 19)에서는 중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달라 학교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법률·국민윤리·국가상황 등 관련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내의 긴급한 수요·국제적으로 선진성을 구유한 교육과정과 교재의 도입을 장려한다. 수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교수학습을 할 수 있으나, 단 응당 보통화와 규범한자를 기본교수학습언어문자로 하여야 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수업은 외국어를 사용하고 또 외국학교 교재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과의 합작학교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른 학력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상응한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졸업증서, 이수증, 학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교육과정에 있어 종교교육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안 된다.

9) 운영 등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이 보장되지만 일정한 통제가 가해진다. 법인 자격을 가진 학교는 이사회 혹은 동사회를 설립하고, 법인이 없는 학교는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사회·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측 구성원은 1/2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법인 학교의 대표자는 이사장·동사장 혹은 교장 중에서 확정한다.

1/3 이상의 구성인원은 5년 이상의 교육·교수 학습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구성원의 교체 혹은 보충,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의 초빙·해임, 정관개정, 규정 제도 개정, 발전계획 제정, 연도별 업무 계획 비준, 학교운영경비조달, 예결산 심사, 교직원의 편제와 인원과 임금기준 결정, 중외합작학교 설립운영기구의 분립·합병·종결 결정,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사항이 그것이다.

인사에 있어 교장 혹은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인 교원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10) 수업료 등

외국인 학교에서는 1년 평균 15,000~20,000달러의 학비가 소요된다.

사립기숙형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1년에 13,800위안(한화 약200만원, 순수 학비는

6,300위안), 중학교는 14,800위안(순수 학비는 보통반의 경우 7,100위안, 실험반의 경우 10,000위안), 고등학교는 16,800위안(순수 학비는 8,800위안)이 소요된다. 외국인 학교에 비해 싸지만 일반 중국학교의 학비나 중국인들의 평균소득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중국 도시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중국사회의 외국어교육 열풍과 유학열풍에 힘입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박종배, 2005).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내국인을 위한 교육체제는 교육행정부서가 담당하고 대외적 교육정책과 교육서비스 산업은 경제부처가 이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이 추진해 온 교육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경제정책으로서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 정책

1) 배경

싱가포르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중국의 급부상, 다국적기업 의존적인 경제체질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위기를 겪었고, 특히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전후 등장한 신경제와 지식기반산업시대에서는 과거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 주도의 수출성장전략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정재완, 2001).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싱가포르의 교육 및 교육서비스 산업 전략은 항상 국가발전전략과 맥을 같이 하였다. 특히 '도시국가이며 인적자원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과 해외인적자원 유치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MoE)와 경제관련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교육부는 주로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수월성 교육 등의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과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 교육서비스 산업육성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담당한다.

2) 교육정책 :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 구축

싱가포르의 교육정책은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라는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 1980년대부터 '학교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함께 학교 간에 자유로운 경쟁개념을 야기 시키고 학교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1997년 이후부터는 수월성을 지향하는 단계로서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s and Learning Nation)'를 표방하였다. 이는 싱가포르 교육부가 교육과정, 교육정보화, 교사의 질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싱가포르 학제는 기본적으로 6-4-2-4제를 취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능력별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예산은 지난 10년간 3배가 증가하여 1990년의 20억 싱가포르달러(1조 5천억원)에서 2000년에는 60억 달러(4조 5천억원)로 늘어났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아교육을 강조하며, 초중등교육에서는 영재교육과 능력우선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촉망받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해외유학 보내는 등 차세대 예비지도자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한다. 또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를 길러주고 있다(양승윤외, 2004).

싱가פור는 UR협상 당시 교육 분야에서는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즉, 교육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이거나, 국가산업육성과 인재 초빙 등을 위해 교육서비스 산업을 개방한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 특히 대학과 대학원 교육서비스 산업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의미이며, 싱가포르 교육정책의 특성상 초중등 분야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특성상 이중언어 교육(영어와 모국어), 민족융화 교육, 투철한 국가관 교육 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교육서비스 산업육성 정책의 추진

싱가포르에서 교육서비스 산업육성 정책을 주도하는 경제개발청은 싱가포르를 지식주도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인 '산업21(Industry 21)'을 수립 추진하였다. 1998년 6월 발표된 이 전략은 싱가포르를 지식주도산업의 세계적 중추로 구축하기 위해서 전자, 화학, 생명과학 등을 비롯한 각 분야별로 비전과 2010년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1년 하반기 이후 정부차원에서 경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향후 진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8년까지 세계 일류도시(Leading global city)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 개방화 확대 ②경쟁력 및 유연성 제고 ③기업가 정신 제고 ④성장의 양 축으로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 발전 ⑤우수 인력 양성 ⑥구조조정 촉진 등 핵심분야를 선정하였다. 2003년 2월 중장기적인 국가비전과 경제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전략보고서 '새로운 도전과 목표(New Challenges, Fresh Goals - Towards a Dynamic Global City)'를 통해서 교육과 보건의료가 포함된 6대 핵심 서비스 산업을 육성키로 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 인력부는 1999년부터 '인적자원21(Manpower 21)'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노동력 확보 차원으로서 또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경쟁우위차원에서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경쟁지식경제로 전화시키고자 하는 싱가포르 국가경쟁력위원회의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수립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유학생들을 미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여 경제강국이 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예를 들어, 자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자국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국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그 후에도 싱가포르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lobal Schoolhouse'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교육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외국의 유명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대학원 수준의 고도의 전문지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1997년부터 세

계적 수준의 대학유치 프로그램(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매우 공격적인 고등교육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외국의 대학들이 분교 형태로 진출할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 대학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과 용자 등의 방식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하였다.

2003년까지 총 10개의 해외대학을 분교설립 또는 싱가포르국립대내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유치하여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고, 2005년 현재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독일, 중국, 호주 등 6개국으로부터 12개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의 글로벌 대학 메카로 급부상하면서 외국유학생수가 2005년 현재 7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까지 15만 명으로 확대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4) 학교설립·경영에서의 특례

외국인의 대학설립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없다. 오히려 싱가포르 정부는 부지를 알선하고, 운영비용 지원을 위해 재정보증을 하는 등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위해 싱가포르대학과 MIT에 각각 1억달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외국대학에 대한 세금혜택은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과실 송금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유현숙, 2004). 이에 힘입어서 2005년 말 현재 유럽최고의 경영대학원인 INSEAD를 비롯 MIT, 존스홉킨스, 조지아 공대 등 12개의 세계 최고 수준 교육기관의 분교를 유치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MoE, 2006).

하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중등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는 없다. 싱가포르는 소규모 국가로서 공통교육과정의 통일적인 운영이 용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각 학교들이 나름대로 마련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함으로써 인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교별 자율화를 확대하고 있다.

독립 당시 다양하고 정리지되지 않은 여러 교육시스템을 하나의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으로 통일하였으며, 선진국의 교육시스템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향후 싱가포르의 교육방향은 공교육을 통한 최대한의 학습능력 개발과 학교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에 기초한 세계적인 우수학교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국회교육위

원회 해외시찰단, 2005).

5) 학교운영의 자율권의 확대

고등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원격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MIT와 실시간(real time) 공동강의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와 원격교육의 형태로 서비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초중등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가 있다. 자율학교(Autonomous School), 자립형 학교(Independent School), 특별지원학교(SAP: Special Assistance Plan School) 등이다.

첫째, 자율학교의 개념은 '국립학교이나 국가가 보조하는 학교 중에서 지정되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유현숙, 2004). 2005년 현재 총 25개교가 있다. 중등학교 21개교와 Full School 4개교 등이다(MoE, 2006).

둘째, 자립형 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추가로 받으며, 학교 경영의 자율권을 더 많이 행사하는 학교'로 모두 중학교 과정이다. 공사립 모두 지정이 가능하다. 1986년 '학교장단의 연구보고서(Towards Excellence in School)'를 기초로 하여 1988년 1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기존의 3개 중학교가 자립형 학교(Independent School)로 전환하였다.(유현숙, 2004)

2006년 현재 총 11개교가 지정되어 있다. 156개 중학교 가운데 5개교, Full School 12개교 가운데 5개교, 주니어 칼리지 14개교 가운데 1개교 등이다(MoE, 2006). 여기에는 Specialised Independent School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경영권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에서 갖고 있으며, 이사회는 20%의 학생 선발권과 70%의 교직원 임명권 및 승진 발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립형 학교에 입학허가 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는 학생1인당 연 S\$7(싱가포르달러) 4,900(한화 약 304만원)를 지급하고 있다(이는 공립학

교 학생들과 같은 액수의 보조금임). 등록금은 일반 공립학교의 10배 수준이다. 일반 공립학교가 연 S\$ 300(한화 약 19만원)정도이고 자립형 학교는 연 S\$ 3,000(한화 약 190만원) 정도이나 학교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있다. 자체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

교과목 수는 8-11개로 일반 공립학교(6-9개)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30-35명으로 일반 공립학교(40명)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5명 정도로 일반 공립학교의 25-28명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교원자격과 관련하여 자연인 이동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외국교사의 국내임용과 자격증 호환에 대한 국내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교원자격 소지자만 임용 가능하다. 자립형 학교에서는 교육부 봉급 기준에 기초한 학교 자체 등급의 봉급과 추가 보너스도 지급된다. 자립형 학교 교사는 교육부 기준보다 평균 약 8% 이상의 급료를 받고 그 외 추가 보너스도 지급되며 교장, 교감, bursar(자립형 학교에만 있는 학교 재무관리 담당자)는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MoE, 2006).

셋째, 특별지원학교는 민족고유의 전통과 문화, 정체성을 살리면서 영어와 모국어의 높은 성취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 1980년대 중반 도입된 SAP School은 국립(Government), 정부보조(Govt-Aided), 자립형 학교 가운데서 지정되는데, 대개 싱가포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화교계 학교를 지칭한다. 2002년 현재 127개의 초등학교, 7개의 중학교, 3개의 중학교 부설 초등학교가 특별 지원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고급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SAP 중학교로 진학할 때는 초등학교졸업 자격시험(PSLE)의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다. 2개 국어 즉, 영어와 중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중국인학교 환경에서 중국의 전통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계만의 특혜로서 민족간의 불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다.

7) Singapore Dollar, 1S\$=약 620원 기준(2006.10 기준).

나. 외국교육기관의 현황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시의 지원 업무는 사실상 경제개발청이 주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정체성 유지와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설립 인가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외국교육기관의 유형

싱가포르에서 설립 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의 학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인 '외국인 학교(Foreigners School)'와 외국인 및 내국인을 위해서 설립 운영하는 다국적 학교인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로 나눌 수 있다.

2006년도 현재 35개의 외국인학교와 2개의 국제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v.sg/>). 외국인학교의 경우, 한국(Singapore Korean School, Korean Church Kindergarten)을 비롯하여 미국(Singapore American School, International School Singapore 등), 일본(Japanese Kindergarten, Japanese School 등), 호주(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캐나다(Canadian International School), 독일(German European School Singapore) 등 35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학교는 2006년도 현재 2개의 중등과정(중-고교 6년) 사립국제학교가 있다. 2005년도에 개교한 Anglo-Chinese School(International)과 2006년에 개교한 Wha Chong International 등이다. 그리고 St Joseph's Institution (International)은 2007년 1월 개교가 확정된 상태이다.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주체는 교육부(국가)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므로 국가(교육부)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승인방식으로는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Education Act(교육법), Cap. 87 (1985 edition)', 'Education Endowment Scheme Act, Cap. 87A (1993 edition)', 'Education Service Incentive Payment Act, Cap. 87B (2002 edition)' 등을 들 수 있다.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자등록청(R.O.C)에 'Companies Act(회사법), Cap. 50 (2006 edition)' 에 의한 Public Company Ltd.(학교의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설립(대의 행정적인 절차나 행위를 모두 일반 회사에 준하여 행함)한다. 그리고 'Education Act'에 따라 싱가포르 교육부에 등록한다. 외국인학교(정부설립 국제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International School 포함)는 Private School로 등록하고, 국제학교는 International School로 등록한다. 일부 외국인학교는 영리법인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설립)국제학교와 대부분의 외국인학교는 소득세 감면을 위해 'Charities Act(자선단체법), Cap. 37 (1995 edition)'에 의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GST: 물품서비스세)는 협상여하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유치중고등 교육기관 모두 설립 가능하다.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제조항은 없으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시 특별한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정기적으로 학생수를 보고해야 하며, 시설물 증개축시 현지 교육시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설립)국제학교의 경우, 싱가포르 교육정책 가운데 이중 언어 정책(Bilingual language policy), 국가교육(National Education: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실시, 수업 시작전 전교생 매일 아침 조회(국기계양, 싱가포르 국가 부르기, 국민선서) 실시 등 3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3)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 및 영리법인 허용여부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에 대한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모두 설립 가능하다. 하지만 '영리법인'과 '과실송금' 허용여부는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에 차이가 있다.

외국인학교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자법' 상에 교육은 '장려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과실송금'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감면을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과실송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enter for American Education'의 경우, 미국계 사립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영리재단이다. 싱가포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인 ISS(International School in Singapore)도 같은 재단이다. ISS의 경우 지난 2005년도 현재 500명 이상의 학생을 유치하여 손익분기점을 넘겼으나, 잉여금을 학교에 재투자하여 세금을 감면받고 있으므로 '과실송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학교의 경우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야한다. 그러므로 과실송금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 입학이 금지되어 있고 해당국의 교육정책을 따르지만, 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 입학이 자유롭고 싱가포르 교육법에 의해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외국교육기관 내 내국인 입학관계

외국교육기관내 내국인 입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결정한다.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입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한쪽 부모가 외국국적자일 경우에는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은 3년 이상 해외교육 이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Singapore, ISS)등 일부 학교의 경우, International School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학교이다. 그러므로 이 학교들은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싱가포르 초중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므로 외국인 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국제학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공립학교로부터 편입학도 가능하고 전학도 가능하다. 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Anglo-Chinese School(International)의 경우, 2006년 현재 재적생의 1/2 이상이 싱가포르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이다(<http://www.acsinternational.com.sg/>).

5)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모두 학력은 인정하지만, 내국인의 국내대학 입학은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IB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국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싱가포르내 대학은 3개의 국립대학만 있으므로 내국인이 외국교육기관을 통해 국내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밀줄친 부분은 국회시찰단과 최근 방문한 다른 연구진의 의견이 엇갈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싱가포르 교육부에 등록되어있는 외국인학교들은 해당국과 동일한 정책 및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학력은 인정하지만, 내국인의 대학입학은 불허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학교 졸업자가 싱가포르 대학에 진학하거나 외국인학교에서 싱가포르 정규학교로 전학할 경우 싱가포르 교육부가 시행하는 별도의 시험에 통과하거나 혹은 국제 공인 대학 입학 자격(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을 취득해야한다.

국제학교의 경우도 학력은 인정하지만, 내국인의 대학입학은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개교한 Anglo-Chinese School(International)과 곧 개교할 St Joseph's Institution (International)은 IB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대학 진학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Wha Chong International은 영국의 'A levels' 교과과정을 따르고 있다.

6) 교원임용 및 재정지원

외국인학교는 교육과정, 교원임용 등의 운영에 있어 해당국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국제학교는 일반학교나 자립형 학교보다 커리큘럼, 학생 선발과 교사 임용, 등록금 책정 등이 훨씬 자유롭다. 그러므로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는 국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의 교원 임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경우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우수교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신규 설립시 정부차원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

이다. 외국인학교인 Overseas Foreign School의 경우 약 144,000M2(약 43,600평)를 100년간 임대받고 있다. 이는 일반 내국인학교의 3배 면적에 2배의 기간에 해당되는 파격적인 우대조건이다. 하지만,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부지나 재정 등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7) 외국교육기관의 수업료

수업료에 대한 특별한 규제조항은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수업료는 학교 간에 차이가 큰 편이다.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연간 수업료는 일반적으로 낮게는 S\$ 4,600~S\$ 14,000(한화 약 285~868만원)에서 높게는 S\$ 6,000 ~ S\$ 18,000(한화 약 372~1,116만원)까지 다양하다. 이에 비해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의 연간 수업료는 S\$ 1,800(한화 약 112만원) 정도이다. 국제학교의 경우, 등록금은 연 S\$ 15,000 수준이다.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50배, 자립형 학교에 비해서는 5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비싼 편이다.

5. 미국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교육서비스 산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국내적으로는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경영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이며 고등교육에 있어서 전세계로부터 유학생을 받아 세계의 고등교육 중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도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나라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규제완화와 차터스쿨 그리고 학교경영 영리법인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개관

미국은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1977년의 비용편익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1981년과

1993년에 이를 보완·개정하고 현재의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에 이르고 있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최병선·신종익, 2002).

일반적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형성해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주 및 지방정부의 재정원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미국 사립학교들이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인 질관리기제가 잘 갖추어져 있기에 국가가 질관리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 기제가 바로 자율적인 평가인정제도(accreditation)이다.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기구는 주로 사립학교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립학교협의회들이며, 그 종류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전국사립학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Schools)'는 미국 전역의 기독교계 학교들의 컨소시엄으로서 회원학교들에 대한 평가인정을 제공한다. 또한 비종교계 사립학교들의 2/3은 '전국비종교학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에 가입하고 있어서, 이 기구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는다. 한편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경우, 상당수가 '전국비종교사립학교협의회(National Independent Private Schools Association)'에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리학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특례라 볼 수 있다.

미국에서 학교승인과 학교설립기준에 관한 권한은 대부분의 주에서 주교육위원회가 갖고 있다(김영철, 2002: 67-68). 공립학교에 대한 특례라고 한다면 차터스쿨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학교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와 다른 특이한 점으로서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임에도 영리법인재단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학교설립상의 특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운영상의 특례인 차터스쿨과 그 학교와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위탁경영하는 영리목적 교육경영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나. 차터스쿨 제도

1) 개념

협약학교(charter school)는 전통적인 공립학교와는 달리 학교운영방법 및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성취수준에 관한 일종의 협약과 같은 현상이나 계약을 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되며 대부분의 지방 혹은 주의 법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어 인사, 교육과정, 재정,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치를 누리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이는 교육소비자들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전통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자발적 기피권(right to opt out)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개황

2005년 10월 현재, 미국에서는 10개 주(Alabama, Kentucky, Maine, Montana, Nebraska, North Dakota, South Dakota, Vermont, Washington, West Virginia)를 제외한 나머지 41개 주에서 협약학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http://www.edreform.com>). 학교수는 총 3,617개교로서,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개교 인가를 받은 학교가 424개교,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개교 인가를 받은 학교가 90개교이다. 학생은 총 1,074,809명이다.

<표 Ⅲ-5> 미국의 차터스쿨 현황(2005. 10)

주	학교수	학생수	주	학교수	학생수
Alaska	24	4,773	Missouri	26	10,780
Arizona	449	96,934	Nevada	20	6,672
Arkansas	17	3,477	New Hampshire	6	517
California	592	219,480	New Jersey	52	14,440
Colorado	116	38,032	New Mexico	51	9,888
Connecticut	15	2,676	New York	79	21,468
Delaware	15	6,791	North Carolina	100	28,154

주요국의 교육규제 및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

주	학교수	학생수	주	학교수	학생수
Florida	326	96,676	Ohio	277	85,082
Georgia	49	21,116	Oklahoma	13	3,866
Hawaii	27	5,405	Oregon	62	9,616
Idaho	23	7,795	Pennsylvania	115	51,504
Illinois	41	17,235	Rhode Island	11	2,398
Indiana	29	7,013	South Carolina	26	5,171
Iowa	7	1,332	Tennessee	12	1,842
Kansas	25	1,950	Texas	259	85,444
Louisiana	21	6,685	Utah	39	11,797
Maryland	15	3,812	Virginia	5	528
Massachusetts	57	20,555	Washington, DC	65	20,116
Michigan	233	86,874	Wisconsin	188	35,406
Minnesota	126	20,650	Wyoming	3	479
Mississippi	1	380	계	3,617	1,074,809

자료: <http://www.edreform.com/index.cfm?fuseAction=stateStatChart&psectionid=15&cSectionID=44>

이들 학교의 협약에는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 폭의 확대, 교육혁신의 촉진과 학생 성취도를 기초로 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증진, 지역사회의 참여증진 등이 교육목표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활동상의 규제는 없지만, 교육구는 대체로 학교가 현장에 충실한지, 미리 상세하게 기술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협약학교의 주요 목적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그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사회나 학부모회가 지역교육구로부터 학교경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지역교육구가 정한 수준의 학력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계속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회사도 학교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영화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학생들이 지역교육구가 정한 수준의 교육성취를 보이지 못할 경우에 지역교육구는 협약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 협약학교를 시작하는 비용은 많을 수 있으나, 대부분 민간 지원금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다(김태완, 2002: 84).

미국에서는 학교교육의 개혁정책으로 주나 지방학구를 대신해 공립 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이윤을 남기는 협약학교 교육사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가정으로부터 수업료 등을 일체 징수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어지는 학교운영예산으로 교육이 행해지며, 철저한 효율주의에 의해 학교운영을 하고 남은 금액은 기업체의 이익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교원단체조합으로부터는 교육현장까지 효율 지상주의의 비즈니스 논리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 공립학교보다 교육수준을 향상시킨 사례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으로 입학에 위한 대기자 명부가 있으며, 교육사업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다. 협약학교는 자율성과 책무성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향상을 내지 못할 경우 지방학구와 기업체 간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율통제에 의해 협약학교를 운영하는 각 기업체는 학생제복 도입, 실험설비 및 컴퓨터 등 기자재 확충, 체험활동 중시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상호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김홍태, 2000: 386).

<표 III-6> 협약학교와 다른 유형의 학교 비교

학교 내용	현장경영 학교 (on-site managemen t schools)	특성화학교 (magnet schools)	협약학교 (charter schools)	교육비지불 보증제학교* (voucher schools)	민영화학교 (privated schools)
지향 가치	자율과 경쟁	자율과 경쟁	자율과 경쟁	자율과 경쟁	자율과 경쟁
운영 주체	교장과 교사	학교와 교육 구	교사, 학부모, 민간회사 등	학교와 교육구	민간회사
운영 방법	공립 학교와 같음	특수 목적 학 교와 같이 운영함	교사, 학부모, 행정가가 스스 로 위원회 구 성, 운영	변화 없음	사립 학교와 같음
권한과 책임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	공립 학교와 같음	학교운영에 대 해 권한과 책임 을 동시에 행사 함	현재와 같음	사립 학교와 같음
학생의 학교선택	금지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학교 내용	현장경영 학교 (on-site managemen t schools)	특성화학교 (magnet schools)	협약학교 (charter schools)	교육비지불 보증제학교* (voucher schools)	민영화학교 (privated schools)
학교선택의 범위	공립	공립	공립	공·사립	공립 사영 학 교**
학교의 학생선택	금지	허용	금지	허용 (사립의 경우)	허용
교육과정 운영	공립 학교 와 같음	전문화된 교 육과정 운영	공립학교와 다 소 다를 수 있 음	변동 없음	공립 학교 와 다소 다를 수 있음
학생등록금	부과하지 못 함	부과	부과하지 못함	공립학교는 부 과하지 못하지 만 사립학교는 부과	부과
재정 지원	일반 공립학 교와 같음	일반 공립학 교보다 더 많이 지원 받음	일반 공립학교 와 같음	주 또는 지방교 육구가 바우처 해당학교에 지 원함	사립 학교 와 같음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책무성	보고의무 없 음	보고의무 없 음	보고하여야 함	보고의무 없음	보고의무 없 음
교원노조와의 관계	공립 학교 와 같음	공립 학교 와 같음	공립학교와 같 음	현재와 같음	사립 학교 와 같음

자료: Danny Weil(2000: 7-12)을 인용한 김태완(2002: 83)에서 재인용

3) 차터스쿨제도의 실태

미네소타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의 실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 신설 및 전환 허용 여부

신규 협약학교의 신설과 공립학교의 협약학교로의 전환이 모두 허용된다 (<http://mb2.ecs.org/reports/>). Georgia주에서 협약학교 운영자는 공립학교의 교사와 학부모에 국한되어 있다. Arizona주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영리/비영리 단체도 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private person)이 협약학교를 제안할 수 있음.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의 폭이 클수록 보다 혁신적인 학교교육 프로그램

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이종재 외, 1998: 5-6). 그리고 협약학교의 수에 대해서도 제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협약학교의 독립성

미네소타주의 협약학교는 지역교육청(LEA)의 관할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청이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http://mb2.ecs.org/reports/>), 학교운영에 대한 행정규제의 유예(Waivers from the Education Code) 정도에 따라 그 독립성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제한적으로 유예를 받는 경우와 협상에 의하여 유예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자동적으로 유예를 받는 경우(Blanket exemption)로 구분할 수 있다.

협약학교가 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교육요구나 제안자의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행정 당국이 학교에 요구하는 교육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학교는 교육행정 당국의 행정규정으로부터 유예조치를 필요로 한다. 유예조치의 범위는 자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New Mexico주의 경우에는 학급의 크기 설정과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재정 운영 등에 있어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예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는 유예조치에 대하여 주 교육당국과 협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Arizona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의 행정규제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유예조치를 제한할 경우에 주 교육당국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이종재 외, 1998: 6-7).

다) 학생 선발

언뜻 보면 시장원리에 따른 학교이지만 학생선발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주로 고객이 되어 왔다. 2004년에 미국 교육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규모가 전통적인 공립학교에 비해 더 작으며 가난한 소수민족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대부분의 협약학교는 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서는 경우 추첨에 의해 선발하고 있다.

추첨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학교가 설치된 지역의 정주민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학교로부터 2마일 이내에 거주하거나 그

다음으로 가까운 공립학교가 5마일 이상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추첨선발전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학교의 권한 행사에 가장 자율성이 낮은 부분이 바로 이러한 학생의 입학 영역이다(Paul Berman et al., 1999: 430; 김홍태, 2000: 397).

미국의 CER(Center for Education Reform)이라는 단체에서는 협약학교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2004년 2월에 협약학교에 관한 강한 법을 가진 주에서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 자율성 강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라) 설립 허가

우리 나라에서 공·사립학교의 설립인가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반면 협약학교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위원회(Local school boards), 중간교육위원회(intermediate school boards), 협동조합(cooperatives), 비영리 조직, 공립 후기 중등교육기관, 사립대학 등이 모두 주 교육부 장관(state commissioner of education)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협약학교를 열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로 한정된다.

마) 신청 재의 요구 절차

교육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거나 주 교육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거부된 신청자는 주 교육부 장관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주 교육부 장관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바) 교사 채용

교사 채용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정책에 대해 NEA와 AFT같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가 입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원노조인 AFT가 처음에는 협약학교 정책을 지지했으나 그 양상이 달리 전개되자 비판적으로 전환되었다. 교육의 시장화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기득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약학교의 수가 늘어날수록 공립학교 교사들의 교섭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 재정

협약학교는 주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받는다. 주 단위의 운영자금 액수는 주의 평균적인 학생당 세입에 기초하여 학생수에 따라 배분한다. 교육청 단위의 운영자금 액수는 학생수와 상관없이 다를 수 있다.

많은 주에서 재정지원의 규모는 학생 재적수나 평균 출석 학생수에 따른다. 많은 주에서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의 경우 주에서 배정하는 재원만 지원하고 있다. 일반공립학교 학생1인당 지원받는 교육비의 75%만이 지원되고 있다. 아리조나 주는 일반 공립학교 학생1인당 지원받는 교육비의 80%만이 지원되고 있다. 뉴저지와 콜로라도 주도 일반학교 교육비에 못 미치고 있다. 학교는 현장계약을 근거로 재정규모에 대한 교섭을 벌인다.

일반학교와 달리 학교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 몇 개주는 학교설립을 위한 착수금을 지원한다. 대개는 독립자산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곤란을 겪는다.(Bierlein, 1997: 58). 낡은 교회나 창고 등을 개조하여 교실, 학교식당, 체육관, 강당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지역 YMCA, 공공도서관, 간이식당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주 정부는 협약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시설자금이나 다른 시설 지원은 행하고 있다. 주 정부의 보조금은 시설보수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학생당 1,500달러나 임대비용의 9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학교의 임대비를 지원한다. 주교육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협약학교는 공립 혹은 사립의 비영리기관이나 비종교 조직, 종교 조직으로부터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미국의 협약학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그리고 최근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도입에 대한 논의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이일용 외, 2005: 24-25).

첫째, 교육의 자율성, 학교의 자율성은 더 이상 제도적 수준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학교는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이상을 현실화한 실례라 할 수 있다. 전체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것인가를 논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실험·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

치로서 그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얼핏 보면 시장원리를 따르는 학교같지만 학생 선발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천이라는 방식이 우연에 의한 비합리적 선발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다른 방식의 선발에 의해 '여과'될 계급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부유한 백인들은 유명한 사립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난한 소수민족 학생들의 협약학교 입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통합적 이념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의 본질적 목표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성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협약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많은 증거는 무엇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관계 있는가를 보여 준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특히 강한 법, 즉 많은 자율성을 행사하는 협약 학교일수록 더 높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보이고 있음은 자율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하고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곧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관련규정들이 주마다 다양함은 우리의 자율학교 규정이나 자립형 사립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함에 있어 또 하나의 획일적인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그 운영규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 교육경영 영리조직

1) 개념

영리교육경영회사(for-profit Educ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는 영리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경영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들이 운영하는 공립학교제도는 시장에

서 영리추구동기를 통해 학교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찬반양론이 분분한 하나의 혁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전형준, 2006). 공립학교 운영을 교육청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비영리·영리법인에게도 허용하는 것으로서 각 주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영리조직 허용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미국 대학들의 높은 학비와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의 행태, 취약해져가는 교육의 질, 그리고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주정부들이 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여 왔다. 이러한 변화를 간파한 영리기업들은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차동준, 2000). 1996년에는 미국 교육부(U. S. Department of Education)의 미국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서 영리 대학을 공식적으로 인증하여 고등교육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장학금, 대여금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박세일 외, 2004: 107). 비영리법인 대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영리법인 대학은 세금이 부과되며, 비영리법인 대학은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영리법인 대학은 주식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비영리법인 대학의 경영은 공유지배구조(shared governance)에 따르지만, 영리법인 대학은 일반 기업의 전형적인 경영방식을 따르는 등의 차이를 갖는다(박세일 외, 2004: 111).

2) 실태

신청자는 신설학교인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승인기관에 요청하는데 승인 결정의 주요 사유는 책무성조항, 학교교육목적과 목표, 교육과정, 건강과 안전문제, 재정, 평가, 통치와 경영, 특수교육 프로그램/서비스, 입학절차, 수업전략, 학교지도자의 배경 등이다.

승인권자는 주교육부, 지역교육청, 대학 등과 이외의 특정 승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2002-2004 학기의 경우, 지역 교육청이 90%, 대학이 5%, 주교육부가 3%, 기타가 2%로 나타났다.

1976년에 설립된 Arizona 주의 영리 목적의 사립대학인 피닉스 대학교는 미 전지

역에 51개 캠퍼스를 두고 60,000여명의 등록학생수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 대학은 1997년 순이익이 3,300만 달러로 나스닥에서 정보통신주들과 경쟁을 할 정도이다. 나스닥 상장사들로 DeVry Inc.은 현재 48,000명의 학생과 함께 연 2,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ITT, Education Management, 그리고 Strayer Education Inc.은 각각 26,000명, 19,000명, 그리고 10,0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IMF로 인해 우리 귀에 익숙해진 J. P. Morgan이나 Merrill Lynch 등의 투자회사들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대학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차동준, 2000).

미국에서 교육경영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영리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경영회사가 운영하는 공립학교 제도는 시장에서 영리추구동기를 통해 학교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찬반양론이 분분한 하나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리교육기관 도입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획일화된 운영시스템의 도입으로 각 지역적 특성이 무시되기 쉽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최선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초중등학교는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지만 대학교나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국내 대기업과 같이 직원 연수 등의 자체수요가 많은 기업이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법인들이 경영학이나 공학, 디자인, 외국어 등과 관련된 대학을 신설하거나 외국 유명대학이나 기관들과 합작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국내학생들의 해외유학에 대한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고, 또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형준, 2006: 25-26).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accreditation)하는 조직으로는 유

유럽국제학교협의회(European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와 미국서부학교연합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국제기독교학교연합회(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국제학위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있다. 앞의 세 기구는 지역이나 성격이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국제적인 기구는 IBO라 할 수 있다.

1968년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국제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인증기구인 IBO는 초·중등 단계의 국제적인 인증프로그램을 전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116개국 1,355개의 학교가 2004년 4월 현재 국제학교로서의 인증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 기구에 가입된 학교가 전무한 상태이나, 인근의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태국, 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의 국제학교가 이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외국교육기관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1개 이상의 I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IB 세계 학교(IB World Schools)는 682개교이다. 72개교는 초등프로그램을, 168개교는 중등프로그램을, 520개교는 학위(졸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의 IB학교는 1971년에 인가를 받았다.

6. 태국

태국은 국제학교의 설립 운영을 통해서 외국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태국이 추진해 온 국제학교 설립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산업육성 정책을 검토해본다.

가. 개관

1) 태국의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

태국의 국제학교는 초기에는 주로 태국 내의 해외파견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로 설립·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국 내국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히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설립·운영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사실, 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제학교의 교육은 태국 내의 모든 국적인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중심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준 높은 학교, 숙련된 행정 관리자와 교직원들, 경쟁력 있는 환경,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친밀한 협력 등의 장점을 통해 태국 국제학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태국의 국제학교를 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폭제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2) 태국의 국제학교의 특징 및 현황

태국에 있어서 국제학교란 다음의 두 가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그 첫 번째가 국제학교의 경우는 해당 학교 주최국의 체제와는 차별된 독자적인 교과과정을 채택·이수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소가 언어로서 강의의 언어는 보통 영어로 이루어진다. 이밖에 다양성도 국제학교의 추가적인 요소로 언급되어질 수 있다. 사실, 다양한 국적과 교육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교수진과 학생들로 구성된다는 점은 국제학교를 특징짓는 사실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현재, 태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태국의 국제학교는 2006년 현재 107개교가 있다. 학교급으로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태국 내에서 혹은 태국 외에서의 고등교육 준비과정인 단계까지 있다. 또한, 규모별로 살펴보면 최소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부터 최대 2000 이상의 대규모 학교까지 다양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국제학교들은 기숙사 프로그램과 통학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방콕과 치앙마이에서부터 푸켓 그리고 동쪽 해안지역까지 태국의 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태국국제학교 연합(ISAT)

개별 국제학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태국에서는 1994년에 국제학교연합(ISAT)이 설립되었다. ISAT 집행위원회는 소규모 학교에서 대규모학교, 기숙사학교와 통학 학교, 비영리학교와 개인학교, 방콕 및 지방의 학교들까지의 모든 국제학교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는 학생 등록이 100명 이하에서 2000명 이상에 이르는 75개의 국제학교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ISAT의 핵심 업무로는 ① 회원교들과 협력 체제 구축, ②회원학교 사이의 협력 체제 구축, ③회원학교에 대해서 학교 개발 후원, ④ 태국 정부기관들과 협력하고 정부정책들과 ISAT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진 요구사항들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는 ISAT와 연합하여 ISAT의 회원학교들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국제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⁸⁾

다.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1) 설립 주체

태국의 국제학교는 내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세우는 학교로서 영리법인에게도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영리법인 사례로는 St. Andrews Int'l School, The Regent's School를 들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만의 독점적 학교운영은 배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게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및 이사는 반드시 내국인으로 한정하게 하고 있다.

2) 승인 주체

태국 교육기관의 설립 심사 등에 있어서 관할청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 진다. 통상적인 학교들은 지방정부의 승인 등을 요구받는 반면에 방콕 소재

8) www.isat.or.th

의 사립학교와 국제학교는 태국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관할 하에 놓여 있다.

3) 국제학교의 운영

가) 내국인의 입학허용 및 학력인정

태국의 국제학교는 과거에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도에 태국인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입학자격 제한을 폐지하여 현재에는 보통 50% 이내에서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⁹⁾ 내국인의 국제학교 졸업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학력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내국인의 경우 태국어, 문화,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는 전제 하에 국내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나) 교육과정

태국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교육 시스템을 축으로 한 것이며, 다른 하나가 영국식 교육 시스템을 축으로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가 국제학사학위 프로그램(IB Program)이다. 이것은 국제학사학위기구(IBO: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3-19세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3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3개의 프로그램(3-12세 대상의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11-16세 대상의 중학교 프로그램:MYP, 16-19세 대상의 IB 학위 프로그램¹⁰⁾)은 다재다능하고, 사려 깊으며 동정심이 있는 젊은이들을 개발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높은 기준의 엄격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학사기구는 책임감 있는 국제적 시민의식과 이해심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9) 전체적으로는 국제학교 재학생 3만명 중 1/3이 태국 학생이지만, 유명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태국인들의 지원이 많고 정부의 50% 상한선에 대한 적용도 엄격하지 않아 실제의 경우에는 70%까지 내국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10) 특히, IB 학위 프로그램은 대학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학생들은 6개의 과목 그룹(언어 A, 언어B,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과 선택과목)에서 각 그룹마다 반드시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IB 학위 프로그램은 교실 밖 흥미에 대한 인식과 좀더 학술적인 전문화를 제공함에 있어 세 가지 요소를 더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지식의 이론, 확장된 논술과 창조, 행위, 봉사(CAS)이다.

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AP(미국대학에의 입학편의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상당수이다.

다) 교수진

태국교육부는 교수와 업무에 대한 인가를 해주기 전에 모든 선생님들이 자질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특히 태국의 국제학교의 경우는 교수진들에 대해 국제교육 인증기관¹¹⁾을 통해 교원의 질을 보장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교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해당국에서 교사 자격을 가짐과 아울러 3년 이상의 실제 교육활동 경력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라) 수업료 및 정부의 지원

국제학교에 있어서 수업료 책정은 전적으로 개별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즉, 그 상한과 하한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태국 국제학교의 수업료는 통상 연간 1만 달러가 넘는 경우가 많다. 대신에 태국 정부가 국제학교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7. 홍콩·핀란드·호주

가. 홍콩

홍콩의 대학교육제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와도 매우 다르며, 영연방 국가들을 제외한 유럽의 여러 나라와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²⁾ 홍콩의 고등교육기관(university sector/ non-university sector)은 수업연

11) 국제학교의 질 보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는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NEASC(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CIS(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등을 들 수 있다.

12) 홍콩에 관한 부분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RR 2001-4-204: 국내외 대학평가의 동향)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한, 학위 수여제도, 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며, 이들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의 운영도 다르다. 예컨대 대학평가의 특징 중 우리와 크게 다른 점으로 홍콩에 진출해 있는 외국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피평가대학에서 평가기관에 상당액의 평가소요 경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홍콩의 대학평가 주관기관은 홍콩학술평심국(HKCAA: Hong Kong Council for Academic Accreditation)이라고 불리운다.

홍콩의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높은 편이다. 2001~2002년도에 정부 예산 중 21.9%가 교육부문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GDP의 4.4%에 해당되며, 교육비 중에서 고등교육비는 약 30%에 달하고 있다. 홍콩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11개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동 연령집단의 18%가 재학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홍콩의 대학교육은 엄청난 양적 팽창으로 말미암아 대학생 비율이 2%에서 앞서 언급한 18%로 늘어났으며,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보장의 과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관계 전문가들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대학교육의 질적 보장 기구로서 1990년에 HKCAA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

HKCAA는 홍콩의 고등교육기관들의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학문적 기준을 정부에 조언·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각 대학들에게 평가인정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입으로 운영되는 법정·비영리 기관이다. 더욱이 근간에 HKCAA는 고등교육분야는 물론 중등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평가인정과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HKCAA의 역할을 좀 더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고등교육기관의 학문적 평가인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독립적 기구이며 권위를 지님; 학사학위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 및 그 밖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평가기준의 검토
- ② 평가인정 여부의 주기적 검토 및 확인
- ③ 평가인정결과 및 평가기준에 대해 정부 및 관련된 비정부기구에 의견 제시
- ④ 외국 대학의 코스에 대한 등록여부를 Registrar of Non-local Higher and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에 제시함.

- ⑤ 외국의 평가인정기구와 상호관계 증진 및 협력 강화
- ⑥ 홍콩 정부(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로부터 부여된 평가인정 업무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수행함.

1980~1990년대에 고등교육분야의 급격한 양적 팽창은 주로 사립학교의 확대와 평생교육 분야가 주도했는데, 공립과 사립간,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준학위 수여 기관간의 교육적 질의 문제와 외국 대학에서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의 질 판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고등교육에서의 질적 보장 또는 평가 인정체제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곧 이어 HKCAA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홍콩의 평가인정제는 종합평가(institutional review)와 학문분야별 프로그램평가(program validation)로 나뉘어지는데, 지난 '90년부터 2000년까지 전자는 모두 12회, 후자는 160회 실시된 바 있다. 이 중 학문분야별 프로그램 평가영역은 문학, 경영학, IT, 건설, 디자인, 사범계(교육), 엔지니어링, 법학, 예술,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의 세부 학문을 고루 평가하고 있다.

홍콩의 평가인정제는 대학분야(university sector)와 비대학분야(non-university sector)로 이원화(binary system)되어 있다.

(가) 대학분야(학사학위 수여기관)에 대한 평가

대학분야가 외부로부터의 평가인정제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93년 UGC(University Grants Committee)에서 주관한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s)를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1996년부터는 HKCAA와 UGC가 주도한 TLQPR(Teaching and Learning Quality Process Review)도 실시되었다. TLQPR평가의 주요 특징은 '과정'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교육과정 설계, 질적 수준 설정, 산출평가, 자원 확보 등의 과제들이 그 결과나 기준 도달 여부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다.

(나) 비대학분야(준학위 수여기관)에 대한 평가

홍콩의 평가인정제도의 추진 배경의 근원은 준학사학위 수여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홍콩 정부는 준학위 수여기관의 평가인정제 모델로서 영국의 질적 보장 기구인 CNAAC(Council for National Academic Awards)의 역할을 본떠서 1990년에 HKCAA를 설립하여, 평가인정제의 목표를 질적 수준 보장과 향상에 두었다.

HKCAA의 평가인정제는 그 절차에 있어서 '자체평가 동료평가 현지방문 보고서 작성·제언'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HKCAA평가에서는 평가대상기관인 각 대학이 교육이념과 발전 모델과 추진 과정 등을 스스로 설정하고 평가기준이 어떤 획일적 기준에 의해 저해받지 않는다. 오직 각 대학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 과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만한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적 질 보장을 위해 그 대학과 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전략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

(다) 외국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평가

1990년대에 들어 홍콩의 자유롭고 경제활동의 활력이 넘치는 시장 환경에 영어권 국가들이 홍콩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이에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학문적 프로그램과 직업적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과 평가인정의 필요를 느끼고 그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관장하는 법령으로 Registrar of Non-local Courses under the Non-local Higher and Professional Education(Regulation) Ordinance가 공포되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400여개의 코스가 HKCAA에 의해 평가받았는데, 외국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핀란드

핀란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고등직업교육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지식기반경제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국가 수준의 자격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

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실업률(특히 청년실업)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의 부족을 토로하는 불일치 현상이 계속되자 직업교육체제가 노동시장의 요구 변화에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 이에 따른 직업의 변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의 변화,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변화 등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할 필요성과 이러한 예측을 감안한 직업준비교육과 직업계속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노경란, 2004). 그 중의 하나가 폴리테크닉의 발전이다.

핀란드 정부는 1991년 법령을 제정하여 직업교육체제전반에 대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 개혁은 직업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¹³⁾ 이 정책은 폴리테크닉을 설립하여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실험단계를 통해서 그 정착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우선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폴리테크닉을 학문적 학위를 제공하는 대학 수준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전문기술 및 능력에 대한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부응하였다. 한편 직업교육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였다. 직업교육의 국제적 호환성을 제고하여 대학과 동등한 위상을 갖추게 하였고 폴리테크닉을 몇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다학문적 컨소시엄으로 구성함으로써 직업교육체제의 기능을 제고하였다. 또한 직업교육의 지역성을 강화함으로써 폴리테크닉이 산업 및 지역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인프라 개발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폴리테크닉은 고등교육 수준의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학교수나 학생수가 일반대학에 비해 월등하게 많으며 전체 고등교육부분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85개의 직업훈련학교들을 통

13) 이하 핀란드 및 호주의 자료는 이정표(2004), 주요국의 고등단계 직업교육체제의 개편 동향과 시사점, 비교교육 연구 제14권 1호의 내용을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합 조정하여 22개의 시범 폴리테크닉으로 설립하였고 그 후 1995년 우수한 9개의 폴리테크닉에 영구인가를 부여한 후 2002년 29개의 폴리테크닉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8월부터는 폴리테크닉에 대학원 과정이 시범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폴리테크닉과 함께 중등교육과의 연계 체제 구축을 포함한 대대적인 직업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

폴리테크닉을 포함하여 핀란드는 중앙집권적 정책에서 지방분권화의 추진, 일터에서의 경험을 자격제도와 연계, 교사의 전문성 제고, 학교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전환 등을 추진하여 직업교육 부문에 대학수준의 학위가 보장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동안 실업계 학생들에게 차단되었던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가능케 하였다(권대봉, 노경란, 2003).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지식 경제로의 진전에 기여하고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나아가 핀란드의 교육서비스 산업의 규모와 질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호주

호주는 국가수준에서 관리하는 통합적 자격관리제도를 정착시켜 그 시사점이 큰 나라이다. 호주가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겪은 이유는 주별로 학생들이 다른 교육내용을 학습하였고 학력의 비교도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학업성취도 기준 자체가 주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호주의 중등교육 졸업자격증은 각 주별로 다른 명칭으로 수여되고 있어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였고, 6개 주와 2개의 지역에서 초·중등·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자격이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어 이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박선형, 2006).

이러한 상황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일차산업으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권역별 경제공동체의 발족에 따른 인적자원 활용체제가 국제화되었으며 직업교육의 혁신 필요성 등에 따라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주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산업구조의 전환과 직업기술교육의 활성화 및 국제화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호주 자격제도는 1995년 1월에 도입되어 5년간의 단계적 시행기간을 거쳐 2000년에 호주 전역에 실시되었다.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중등학교(고등학교) 부문에서 고등학교 졸업장(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직업교육훈련 부문에서 1급부터 4급 자격증(certificate), 준학사학위(diploma), 및 고급 준학사학위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기성, 2003).

이와 같이 호주자격제도는 중등후기 자격(senior secondary certificates)으로부터 박사학위자격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단일의 자격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 속에서 다양한 자격들이 서로 연결되고 국가적으로 질을 보장하며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다양한 교육훈련을 촉진하고 있다.

호주 자격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훈련내용과 품질보장을 위한 예로서 '훈련 패키지'와 '품질보장체계'를 들 수 있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이기성, 2003). 훈련 패키지는 개인의 기술을 인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가 승인한 표준과 자격 요건의 묶음이다. 즉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서 종사할 근로자들을 위하여 훈련의 방향과 준비 사항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능력 표준, 자격요건, 평가지침 등을 제시한 문서이다. 훈련 패키지는 무슨 훈련을 받을 것인가와 같은 세밀한 사항을 규정하지는 않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며 학습자의 요구와 능력, 환경 등에 따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사가 개발한다. 품질보장체계는 직업훈련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등록된 훈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준거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산업계 또는 기업계의 특정 훈련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장비 기타 자원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1990년 초반부터 국가적 수준의 대대적인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통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같은 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계속 교육을 지원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질 높은 인력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호주 정부는 오랫동안

안 대학이 아니면서 고등교육을 수행해 온 기술계속교육대학(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 TAFE)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였다.

호주의 TAFE는 핀란드의 폴리테크닉과는 달리 직업교육기관 형태의 외형적 변화없이 기능과 역할의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배경에는 호주 정부가 성과중심(outcome-based)의 국가적 수준의 훈련체계(National Training Framework)와 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하고 TAFE와 같은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이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경쟁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외형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전의 TAFE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직업교육의 성과에 준하여 재정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학생유치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호주의 자격제도와 직업교육의 발달은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호주의 직업교육은 국제적으로 그 질을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의 직업교육제도 자체가 교육후진국들의 학생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교육서비스산업의 선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에는 국가 수준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자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8. 종합검토

지금까지 한국과 외국의 교육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 관련 정책을 중점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교육산업육성정책과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인학교의 유형, 설립규정, 영리법인허용 여부, 내국인입학여부, 학력인정, 교원임용, 수업료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동향

세계화, 고도정보화, 지식경제의 진전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은 교육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에 주목하면서 그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식경제의 진전에 따라 직업교육은 산업경제 시대의 틀로부터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선진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그 질을 인정받아 교육후진국들의 학생들을 대규모로 유치하여 교육서비스 무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육후진국들은 여전히 산업경제시대의 낙후된 직업교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개발을 하지 못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학생들은 해외로 유출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서비스 시장만 보면 결코 작지는 않지만 내국 수요 중심에다가 입시준비 학원 산업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지극히 저조하며 고등교육은 물론이고 초중등교육까지 해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2003년 현재 사교육비의 규모는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 산업경제 시대의 일반교육 우위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반교육과 특정학교에 비정상적이 집착과 선발경쟁, 그리고 직업계열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과 직업교육의 천시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단순노동분야에 외국인의 유입이 증대하고 전문적인 인력개발에 실패하면서 청년실업이 대량 발생하고 있는 등 큰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서비스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그 종류와 형태별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시스템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시장지향적 특성은 미국 고등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은 2005년에 56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학생이 5만명이 넘는다. 또한 외국 소재 미국 고등교육기관이 2002년 기준 총 225개나 해외에서 운영중이다. 또한 영리목적의 고등교육

기관의 해외 진출이 주목할만한 것으로서 그 잠재적 성장력이 매우 강하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연평균 16,000달러에서 46,500달러 정도를 학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고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경제 순기여 금액은 132억 달러를 넘으며 미국 고등교육이 전체 서비스 부문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5위에 이르고 있다(유현숙 외, 2006).

고등교육기관의 외국 학생 유치실적만 보면 미국 56만명, 영국 22만명, 독일 21만명, 프랑스 14만명, 호주 12만명, 일본 7만명 그리고 우리나라가 1만명 정도로 그 규모만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 학생 유치에서 뒤쳐져 있다(UNESCO, 2004).

호주, 핀란드, 영국 등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식경제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고도의 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자격제도의 개발을 통해서 교육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서비스 산업에 특히 현저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중국도 동북아 교육 허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태국, 홍콩 등도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나. 교육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교육서비스 산업은 지식경제로의 진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격제도의 발달, 직업교육의 발달 등과 관련되어 육성되어 왔다. 지식경제의 발달은 고도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직업교육의 전문화와 고등교육화가 진행된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자격관리제도가 발달하며 더 나아가 자격제도의 국제화와 직업교육의 국제화가 나타난다. 교육선진국의 자격제도와 직업교육은 교육후진국 학생들을 대규모로 유치하게 된다.

한편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중에서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특별구역제도이다. 대개 특구 안에서는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중국은 1979년에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을, 1984년에는 상하이를, 1991년에는 푸둥을, 1997년에는 홍콩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방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1998년 지식 기반산업의 세계허브 달성을 목표로 'Industry 21'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나라 전체를 특구화하고 있다. 국제환경은 개방전략에 따라 국경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 3개년 계획'을 결정하여 공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기존의 규제개혁에 더해 민간개방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구조개혁특구 제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매우 비슷하며 이 안에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이 들어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화, 학사운영의 탄력화, 입학연령의 특례화, 교직원 임용, 주식회사에 의한 학교 설치, 학교설치기준 완화, 공사협력학교의 설치, 학교설치회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심지어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학교 설치를 새로운 학교의 관리 운영 방법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례로서 자리잡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교육특구제도는 그렇게 혁신적이라 보기 힘들다.

다. 외국교육기관 혹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책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은 교육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국가들 중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시사점을 줄 만한 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할 수 있다.

<표 III-7> 경쟁국의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규제 실태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1. 유형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합작학교)	외국교육기관 (Temple University Japan, 외국대학 분교)	외국교육기관
2. 설립 승인	교육부장관(법5조)	대학은 중앙정부 ('국무원'), 전문대 이하는 지방정부	대장성	인가는 교육부, 경제개발청이 사실상 주도
3. 설립주체	외국학교법인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의 합작	외국인	내외국인 모두 가능
4. 설립가능 학교급	초중고, 고등 모두 가능	취학전교육, 중고 등교육	대학	유·초·중·고·대학 모두 가능
5. 영리법인 허용여부	불허	금지규정 없음	허용	허용 금지규정 없음
6. 설립기준 제정권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률에 근거	상법에 근거	교육부 (도시국가)
7. 내국인 입학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	내국인을 주요모집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도 가능	허용	원칙적으로 불허, 3년이상 해외교육 이수자 제한적 허용
8. 국내학력 인정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과정 이수 경우 학력인정 대학과 전문대학은 그대로 학력인정	인정	원칙적 불인정, 다만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및 대학원 입학에 있어서는 학력 인정함	학력은 인정 내국인의 국내 대학 진학 불가능
9. 외국인 교원	관여안함	교장과 주요행정책임자는 내국인. 기타 외국교원은 학사이상	관여안함	해당국의 정책을 따름, 외국인 임용 가능
10. 수업료 등 제정	관여안함	별도 규정 없음	관여안함	공립학교의 50배 수준, 수업료 규제 조항 없음, 펀드 조성 허용
11.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여부			허용	허용. 규제조항 없음

<표 III-8> 경쟁국의 외국인 학교에 관한 규제 실태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1. 유형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중국에서는 ‘섭외학교’라 함. 학교에서는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2. 설립 승인	교육감	지방정부(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인가는 교육부, 경제개발청이 사실상 주도
3. 설립주체	외국인	외국인	내·외국인 모두 가능	내외국인 모두 가능
4. 설립가능 학교급	초중고	유·초·중·고	유·초·중·고	유·초·중·고·대학 모두 가능
5. 영리법인 허용여부	불허	금지	불허	허용 금지규정 없음
6. 설립기준 제정권자	법률에 근거 시행령으로 규정	법률에 근거	문부과학대신	교육부 (도시국가)
7. 내국인 입학	제한적인 허용	금지	허용	원칙적으로 불허, 3년이상 해외교육 이수자 제한적 허용
8. 국내학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	원칙적 불인정, 다만, 최근에 대학입학에서 정 추세 확대	학력은 인정 내국인의 국내대학 진학 불가능
9. 외국인 교원	관여하지 않음	외국인	각종학교로서 제한 없음	해당국의 정책을 따름, 외국인 임용 가능
10. 수업료 등 제정	관여하지 않음	법규정 없음 *예: ‘영국국제학교의 수업료’ (이름은 국제학교이지만 외국인학교에 해당함) 유:\$5,200 초:\$5,850 중:\$6,000 고:\$6,900	수업료 규정 없음, 개별학교를 결정	공립학교의 50배 수준, 수업료 규제 조항 없음, 펀드 조성 허용
11.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여부			불허	허용. 규제조항 없음

※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가 설립한 3개(2007년 1월 현재)의 국제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International School은 외국인학교임

<표 III-9> 경쟁국의 국제중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에 관한 규제 실태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1. 유형	국제학교	합작학교	국제학교 (구조개혁 특구 내)	(정부설립)국제학교
2. 설립 승인	교육감	대학교는 중앙정부인 국무원, 이외 전문대와 중등학교 등은 지방정부	내각총리대신	교육부 인가, 국가 정체성교육 실시 요구
3. 설립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중국교육기구와 외국 교육기구의 합작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주식회사 등	내외국인 모두 가능
4. 설립가능 학교급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고등교육, 취학전 교육(학원도 가능)	초중고 모두 허용	유·초·중·고·대학 모두 가능
5. 영리법인 허용여부	불허	금지규정 없음	허용(학교설치회사의 설립운영)	불허
6. 설립기준 제정권자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교육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교육부(도시국가)
7. 내국인 입학	가능	“중국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함. 국외학생모집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함.	가능	1/2이상 허용 의무사항임
8. 국내학력 인정	인정	헌법·법률·국민윤리·국가상황 등의 교육과정 개설의무화. 보통화와 규범한자를 기본교수 학습언어문자로 함(외국어 수업가능)	인정	학력은 인정, 내국인의 국내대학 진학은 불가능
9. 외국인 교원	임용가능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는 내국인. 외국 교원은 학사 이상	임용가능	국내 교원 자격증 없는 외국인도 임용 가능
10. 수업료 등 재정	수업료 자율채정 가능	별도 규정 없음	자율채정	공립학교의 50배 수준, 수업료 규제 조항 없음, 펀드 조성 허용
11.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여부		규제조항 없음	규정 없음	허용. 규제조항 없음

※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중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설립 사례는 없음.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수용하여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 형태로는 싱가포르 정부가 설립한 3개(2007년 1월 현재)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를 참고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경쟁국들의 전통과 당면한 사회적 상황이 다양하듯이 각국의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 제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일본의 외국인학교는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적 정서를 강조하는 민족학교와 서구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다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로 구분되는데, 양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특징이 있다. 즉, 일본에서는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국립대학 입학자격 부여 및 기부금 공제 제도에 있어서 민족학교와 국제학교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데, 국제학교는 우대하는 한편 민족학교는 다소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에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사립각종학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외국인학교에의 내국인의 입학은 학생·학부모의 자유 선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 선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도도부현 및 시정촌 등 각 지방공공단체가 외국인학교 및 그 재학 자녀들에 대한 각각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외국교육기관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의해 설립되어 외국인 자녀를 위한 섭외학교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의 교육기구와 중국의 교육기구가 중국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협력하는 합작학교가 있다. 또한, 중국 내국인이 설립·운영하지만 중국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국적 학생들이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학교가 있다. 이들 유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학교가 합작학교이다. 사실 중국의 외국교육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과 합작을 통한 학교의 설립·운영 체제 즉 합작학교인데, 중국정부는 특히 자신들이 뒤쳐진다고 여기는 학문 및 기술 분야의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합작학교의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권장책을 펼치고 있다. 이 합작학교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주된 입학 대상이다. 반면 중국이 오늘날 많은 외국유학생을 받아들여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 및 문화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의 유학학교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그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외국교육기관의 유형 또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서비스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음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외

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 업무를 교육부가 아닌 경제개발청이 주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학교¹⁴⁾와 국제학교¹⁵⁾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정부설립) 국제학교 그리고, 외국의 학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인 외국인학교가 그것이다. 전자는 싱가포르 학교 제도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후자는 학교위치만 싱가포르에 있을 뿐 모든 것은 해당국에 따르도록 완전 개방해 놓은 것으로 이 경우에 내국인 입학은 원칙적으로 불허이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와 같은 각국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가 갖는 특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바, 그것은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점차 그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성 확대의 중심에는 외국계 영리법인에 의한 설립·운영 및 과실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하는 것이다. 그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상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이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를 통해 외국계 영리법인이 외국교육기관 특히 외국대학의 분교를 설립·운영하고 외국인 및 내국인이 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 내에서는 학력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급학교의 입학자격 및 내국학교와의 학점 교류가 인정되고 있어 사실상 학력인정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본국으로의 과실송금도 허용하고 있다. 이 유형의 대표적 것이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Temple University Japan이다. 또한, 아직은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조개혁 특구제도와 관련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영리법인의 설립·운영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교육법에 근거하여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섭외학교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에 의한 설립·운영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

14) 싱가포르 정부가 설립한 국제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International School은 외국인학교임.

15)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중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설립 사례는 없음.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수용하여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 형태로는 싱가포르 정부가 설립한 3개(2007년 1월 현재)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를 참고할 수 있음.

으나, 합작학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명문으로 영리법인에 의한 설립·운영 및 과실송금을 금지하지 않는 소극적 입법을 통해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전술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외자법상에 교육을 장려업종으로 분류하면서, 영리법인에 의한 설립·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실송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한적 허용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International School Singapore와 Center for American Education이 현재 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은 영리조직에 의한 학교의 설립·운영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이다. 교육경영영리조직으로서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해당법인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의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제도화된 협약학교와 관련하여 각 주마다 다르지만 아리조나 주의 경우에 협약학교의 운영자로 영리단체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밖에 태국도 외국교육기관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 내외국인 함께 수학하는 국제학교를 영리법인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만의 독점적 학교운영은 경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IV. 제언

세계화, 고도정보화, 지식경제사회에서 교육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전략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는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정책 관점에서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서비스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국내 교육체제와 관련을 맺되 가능한 한 기존 체제에 부정적인 과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교 평준화 등 기존 교육체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교육정책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경제정책 내지 산업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산업육성은 국내 교육시스템과 어느 정도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같이 외국 대학의 유치나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혜택의 부여 등은 교육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맥락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령의 정비에 있어서도 기존의 교육관계법의 정비가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중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영리 및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도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산업육성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력개발 및 자격제도 등과 관련을 맺으면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체제와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2. 기존 교육체제의 개방성 제고

기존의 학교교육체제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좀 더 개방적이고 외국 학생들에 대하여 포용적인 체제로 전환되어 가야 한다. 즉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학급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별도로 국제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는 방법도 효율적이지만 미국 등지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학교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학급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예시적인 제안에 불과하며 우리 교육체제가 국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3. 직업기술교육의 국제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산업 중에서 외국교육기관에 관련해서는 영어학습이 가장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개는 영어와 그것을 통한 국제감각과 능력의 함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기술교육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경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에 있어서는 일반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훈련체제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핀란드와 호주의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육성의 예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직업기술교육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사학체제의 다양화

기존의 사학체제도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좀 더 다양한 것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제도는 학교법인체도를 중심으로 확립된 틀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며 이 밖에 다른 제도가 시행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공설민영학교나 학교 자체가 법인이 된다던가, 외국의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가 국내에 진입하는 경우 학교법인 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공립학교의 대용학교적(代用學校的)인 사립학교제도만을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어렵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학체제도도 다양한 교육 수요(외국인 및 내국인의 교육수요를 모두 포함)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이 법제도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5.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균형

비영리법인의 국내진입과 영리법인의 국내진입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도리어 표면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을 표방하면서 내부적으로 갖가지 영리적 수익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적어도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해야 하므로 비영리법인보다 경영상태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학교를 경영하면서 생기는 잉여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자산의 증가를 통해서 자본을 늘리고 이를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익이 분배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허용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곽재석외(2005), 주요국 초·중등 교육개혁 사례분석과 한국적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6),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 교육인적자원부(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
- 구자익 외(1998), 교육개혁 지역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2006),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토론 과제,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2006),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와 자치분권 주요내용
- 국민경제자문위원회(2006),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 국회교육위원회 해외시찰단(2005), 인접 경쟁국의 우수교육기관 유치 등 교육개혁 추진상황 시찰
- 김영철, 이병식(2002),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 동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우(200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통권 22호, 99-130.
- 노진곤(1999),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권, 63-85.
- 박태승(2004), 학교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113-141.
- 양재모(2004), 비영리법인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법과 정책 연구 제4권 제2호, 4-5-429.
- 윤정일·백순근(2006),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조기유학

참고문헌

-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4권 2호, 299-322.
- 이병식· 채재은(2006),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 라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 교육행정학 연구 제24권 1호, pp.267-288.
- 이일용·김병주·김성기·이명균(2005), 자립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육성 방안 연구
- 이정표(2004), 주요국의 고등단계 직업교육체제의 개편 동향과 시사점, 비교 교육 연구 제14권 1호.
- 재정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2005), 기지정 특구의 규제특례 적용현황 및 특구유형별 규제특례 적용모델.
- 전형준(2006), 교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 타당성 검토-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1-33.
- 정책기획위원회(2005), 해외 주요국 전략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실(2006),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특별자치담당관실.
- 제주도교육청(200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교육분야 시행령안.
-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2006),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상황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실(2006), 핵심 산업 워킹그룹 교육분과 2차 회의자료.
- 최금진, 배장오(2003), 자율학교의 자율권 활용실태 및 교육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Vol. 41, No. 2; 253-275.
- 최지희(2003), 평생학습체제의 마련과 호주의 직업교육 개혁동향, 평생교육학연구, 제9권 3호, 201-224.
-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2006),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국내외 대학평가의 동향.

행정자치부장관(20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6-60호, 행정자치부.

행정자치위원회(20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미국관계

김영철, 이병식(2002),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 동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김용일(2006),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불평등, 진보평론 제10호.

김홍태(2000), 차터스쿨 운영의 실제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8권 3호; 395-407.

박세훈(2002), 한국의 자율학교와 미국의 차터스쿨 비교 연구, 교육학연구 제41권 4호; 207-229.

신상명 외(2005), 공영형 혁신학교 모형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양성관(2006), 외국의 학제 개혁동향: 학제연구전문가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이종재 외(1998), '협약학교 모형과 적용가능성 검토',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현장교육탐구보고.

최병선·신종익 편(2002),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 미디어.

황혜신(2004),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현황과 미래,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8호.

Alex Molnar(2006), Profiles of For-Profit Educ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Eighth Annual Report 2005-2006, Education Policy Studies Laboratory, Division of Educational Leadership and Policy Studies College of education, Arizona State Univ.

Bierlein(1997), Charter Schools in Action: Final Report, Hudson Institute.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Regulatory Reform(2005), Second Report on

참고문헌

the Promotion of Regulatory Reform and the Opening Up of Government-driven Markets for Entry into the Private Sector 'Creating a smaller, more efficient government – Public and private sector competition and more choice for consumers and users'

Kevin Watkins(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 UN Plaza, NewYork, 10017, USA.(2004)

일본관계

고 전(2003), 일본교육개혁 흑·백서, 학지사.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2004), 官製市場의 民間開放에 의한 民主導의 經濟社會의 實現.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2005), 작지만 効率的인 政府의 實現을 向하여 –官民을 통한 競爭과 消費者·利用者에 의한 選擇.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2005), 敎員養成分野에 있어서 專門職大學院의 活用件- 에 대한 回答에 관해서, 문부과학성.

신현석(2002),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 -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2권2호.

유현숙 외(2006),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교육개발원.

일본내각부(2005) 敎育委員會·學校法人양케이트 및 敎員양케이트 集計結果.

최은봉(2002), 글로벌리제이션과 현대 일본의 교육개혁, 현대일본학회, 일본 연구논총.

학교설치회사연맹(2006), 學校設置會社連盟概要.

학교설치회사연맹(2006), 敎育마우처제도의 제언서.

한용진(2004), 일본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동향,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아시아 문화 20권.

한형서(2003. 11), 일본 관료들의 역할과 행정개혁, 월간 아태지역동향.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2006), 일본의 FTA 추진 전략과 시사점, 해외경제정보 제2006-44호.

홍진이(2003), 일본의 행정개혁의 특징과 그 배경, 동서연구 제15권; 163-188.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Regulatory Reform(2004), Outline of the interim Summary-"Realization of a Private Sector-led Economic Society" through the opening of Government-driven Markets for Entry into the Private School.

Fujii Rouji(2002), A Study on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IAI) System in Japan, 영남지역발전연구 제30집.

UNESCO(2004), Global Education Digest.

중국관계

이경자(2006), 중국 대학교육 개혁의 동향,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구자역(2004), '중국정부, 교육시장을 대폭 개방하다', 새교육 2004년 9월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향: 주요 경쟁국의 경영/생활환경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종배(2006), '세 종류의 국제학교', 교육정책포럼 2006년3월호,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jsj.edu.cn>

핀란드관계

권대봉, 노경란(2003), 한국과 핀란드의 교육체제 비교, 인력개발연구 제5권2호.

참고문헌

- 노경란(2004), 국민소득 2만불 진입을 위한 핀란드의 국가인적자원정책 연구, 인력개발연구 제6권1호.
- Antikainen, Ari(EDT)(2005), Transforming A Learning Society, Peter Lang Pub Inc.
- Committee for the Future Parliament of Finland(2001), Finland 2015: Balanced Development, FIN-00102 Helsinki.
- Johanna Einarsdottir(EDT)/Wanger, Judith T(EDT)(2006), Nordic Childhoods And Early Education, Lightning Source Inc.
- Lewis, Richard D(204), Finland, Cultural Lone Wolf, Intercultural Pr.
- Matti Kyrö(2006),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Finland,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6.
- MINISTRY OF EDUCATION(1998), Higher Education Policy in Finland, Helsinki.
- MINISTRY OF EDUCATION(2006), Education and Science in Finland, Communications and Public Relations PO Box 29, 00023 Government, Finland.
- OECD(2003), Reviews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Polytechnic Education in Finland, OECD Publications Service.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Renourf Pub Co Ltd.
- Ritva Kivi(2000), "New Technology and Education in Finland", PEB Exchange, 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 2000/12, OECD Publishing.
- Robert Arnkil(2004), 핀란드의 고령화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권.
- Vehvilainen, Ollie(EDT)/POK, Attila(EDT)(2003), Hungary and Finland in the 20th Century, Intl Specialized Book Service Inc.

Wilson, Edmund(2003), To the Finland Station, Random House Inc.

싱가포르관계

국회교육위원회 해외시찰단(2005), 인접 경쟁국의 우수교육기관 유치 등 교육개혁 추진상황 시찰.

김박수 외(1994), 우리경제의 국제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박수 외(1994), 우리경제의 국제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숙(2003), 홍콩·싱가포르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40권; 2025-2042.

김숙(2003), 홍콩·싱가포르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40권; 2025-2042.

박양열(2000), 싱가포르의 Infocomm 21 마스터플랜 추진전략, 정보화동향분석 제7권 제15호.

박양열(2000), 싱가포르의 Infocomm 21 마스터플랜 추진전략, 정보화동향분석 제7권 제15호.

서동혁(1999), 21세기지식기반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싱가포르의 산업발전 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서동혁(1999), 21세기지식기반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싱가포르의 산업발전 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양승윤외(2004), 싱가포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유현숙외(2004),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정책 연구 - 싱가포르, 일본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외(2004),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정책 연구 - 싱가포르, 일본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이정표(2004), 주요국의 고등단계 직업교육체제 개편동향과 시사점, 비교교육 제14권 1호.

임성훈, 김학민(2004),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수립 메커니즘과 각국 사례연구-

참고문헌

-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45-71.
- 임성훈, 김학민(2004),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수립 메커니즘과 각국 사례연구-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45-71.
- 정재완(2001),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 이해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재완(2006),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및 교육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a Ho Mok(2000), Impact of Globalization: A Study of Quality Assurance Systems of Higher Education in Hong Kong and Singapor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 44, no. 2.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2006), 2006 EDUCATION STATISTICS DIGEST.
- Vincent-Lancrin, S.(2005), Trends and Quality Issues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Future Direction on Tasks for Quality Assurance System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85-101.

호주관계

- 강영혜(2006), 영국의 학제개혁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의 학제개혁동향.
- 김승택(2002), 사회안전망체계의 국제비교연구(I)-영국-, 한국노동연구원.
- 김운태(2005), 영국의 경제 정책과 고용정책,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64호.
- 박선형(2003), 영국의 교육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정일환외(2002), 현대비교교

- 육발전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선형(2006), 호주의 학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재, 강순희(2003),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II) -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노동연구원, 매월 노동동향 2002.10.
- 이기성(2004), 호주의 중등 및 중등교육 이후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혁의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제14권 2호, 95-118.
- 최지희(2003), 평생학습체제의 마련과 호주의 직업교육개혁동향, 평생교육학연구, 제19권 3호, 203-224.
- ACCI(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2005), An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 Would Benefit Employers, 24 Brisbane Ave, Barton ACT 2600.
-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AQF) Advisory Board(2002),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Implementation Handbook. Third Edition.
-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2006),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 Exploring a way forward, Commonwealth of Australia.
-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2006), Country Education Profiles: Australia 2006, Commonwealth of Australia.
- OECD(2003), The Role of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in Promoting Lifelong Learning, Background Report for Australia, <http://www.oecd.org/rights>.
- Department for Educational and Skills(2006), Departmental Report 2006, TSO(The Stationery Office) PO Box 29, Norwich, NR3 1GN.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2004), UK National Action Plan For Employment.

참고문헌

Jane Creasy, Sarah Harris(2006), England: using scenarios to build capacity for leadership, 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 Think Scenarios, Rethink Education, OECD.

Ruth Kelly(2006), Youth Matters: Next Steps: Something to do, somewhere to go, someone to talk to, Department for Educational and Skills.

Abstract

Education Service Industries in Major Countries

Jae Youn Park et.al.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education service industries in major countries and utilize implications of their experiences. 'Major countries' in this study are Singapore, Japan, Australia, US etc. Constituent of the education service industries are element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social education etc. The key agents of educational service industries are schools especially International schools(including college and university) carry out important roles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ervice industries.

In Korea It is considered as a serious problem that number of students are dramatically decreasing and increasing of the studying abroad students. In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oving toward the knowledge-based economy,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es(universities and colleges) endeavor to survive.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of education service industries will give Korean higher education useful implications.

Singapore is a pioneer state in the 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 industries. Singapore invites many foreign famous universities and endeavor to bring up the education service industry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In fact many worldwide famous higher education institutes provide quality program in Singapore international students.

Recently Japan also try to develop 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 industry.

참고문헌

Especially Australia established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that integrates courses of the academic study and the vocational skill training. In Australia qualification framework students easily move from academic route to vocational route and from vocational route to academic route. The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TAPE) in Australia attracts many foreign students and Australian education service industry became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United States higher education system have been considered as the best system in the world by many students.

부록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현재 시행법령 확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본다.

제18조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징계·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7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장 그 밖의 교원의 임용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교육관련 특화 사업을 실시하는 특

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한 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에 한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 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할 수 있다.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사증의 발급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제정 2004.9.22 대통령령 제18549호]

제8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치(대치) 규정은 공립학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제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예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①관할교육감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록

<부록 표 1> 미국의 영리 학교경영회사(EMOs) 현황

School Year	Companies 의 수	Companies에 의해 경영된 학교 수	Companies에 의해 조정된 입학자 수	Companies 를 허용하는 주
1998~1999	13	135	N/A [*]	15
1999~2000	20	230	N/A [*]	21
2000~2001	21	285	N/A [*]	22
2001~2002	36	368	142,709	25 ^{***}
2002~2003	54	406	189,199	26 ^{***}
2003~2004	51	463	200,403	29 ^{***}
2004~2005	59	535	239,766 ^{**}	25 ^{***}
2005~2006	51	521	237,179	29 ^{***}

* 입학자의 처음 3년간 자료는 없음

** 2004~2005년의 전체 일년간 입학자는 추정치임

*** 워싱턴 DC를 포함함

자료: Alex Molnar, David R. Garcia, Margaret Bartlett, Adrienne Oeill(2006), Profile of For-Profit Educ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Education Policy Studies Laboratory.

<부록 표 2> 영리 EMOs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의 차터스쿨 현황

	전체 학교급	
	2004~2005	2005~2006
차터스쿨 ^{**}	2,010	2,319
EMOs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	436(21.7%)	438(18.8%)
Large EMOs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	336(16.7%)	347(15.0%)

※ 비차터스쿨(Non-Charter school)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가상(Vitual) 차터스쿨과 가상의 비차터스쿨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 미국 차터스쿨의 수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Common Core of Data에서 가져옴

자료: Alex Molnar, David R. Garcia, Margaret Bartlett, Adrienne Oeill(2006), Profile of For-Profit Educ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Education Policy Studies Laboratory.

<부록 표 3> 미국의 학교급별 차터스쿨

	초등(Primary)		중등(Middle)		고등(High)		기타(Other*)	
	2004-2005	2005-2006	2004-2005	2005-2006	2004-2005	2005-2006	2004-2005	2005-2006
차터스쿨수**	965	1,054	177	221	558	542	310	502
EMOs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 수	257 (26.7%)	256 (24.3%)	12 (6.8%)	9 (4.1%)	96 (17.2%)	96 (17.7%)	71 (22.9%)	77 (15.3%)
Large EMOs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 수	214 (22.2%)	213 (20.2%)	8 (4.5%)	7 (3.2%)	67 (12.0%)	62 (11.4%)	47 (15.2%)	60 (12.0%)

※ 비차터스쿨(Non-Charter school)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가상의(Vitual) 차터스쿨과 가상의 비차터스쿨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 미국 교육부는 “기타” 학교를 초등과 중등학교 형태의 학년제 진학을 하지 않는 학교로 정의함. 학교급의 정의는 부록 D를 참조

** 미국 차터스쿨의 수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Common Core of Data에서 가져온 자료: Alex Molnar, David R. Garcia, Margaret Bartlett, Adrienne Oeill(2006), Profile of For-Profit Educ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Education Policy Studies Laboratory.

<부록 표4> 미국의 학교급별 차터스쿨 등록자수(U.S. Charter Schools Enrollment by School Level)

	초등(Primary)		중등(Middle)		고등(High)		기타(Other*)	
	2004-2005	2005-2006	2004-2005	2005-2006	2004-2005	2005-2006	2004-2005	2005-2006
모든 차터스쿨의 등록자수** (Number of Enrolled in All Charter Schools**)	277,240	310,826	43,768	53,338	119,999	132,676	124,641	185,210
EMOs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의 등록자 수 (Number of Charter Schools Managed by EMOs)	114,591 (41.3%)	112,746 (36.3%)	3,215 (7.3%)	3,037 (5.7%)	30,309 (25.3%)	28,005 (21.1%)	27,235 (21.9%)	27,381 (14.8%)
Large EMOs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의 등록자 수 (Number of Charter Schools Managed by Large EMOs)	102,165 (36.9%)	99,865 (32.1%)	2,111 (4.8%)	2,391 (4.5%)	25,047 (20.9%)	18,708 (16.7%)	22,198 (15.0%)	18,953 (10.2%)

※ 비차터스쿨(Non-Charter school)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가상의(Vitual) 차터스쿨과 가상의 비차터스쿨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 미국 교육부는 “기타” 학교를 초등과 중등학교 형태의 학년제 진학을 하지 않는 학교로 정의함. 학교급의 정의는 부록 D를 참조

** 미국 차터스쿨의 수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Common Core of Data에서 가져온 자료: Alex Molnar, David R. Garcia, Margaret Bartlett, Adrienne Oeill(2006), Profile of For-Profit Educ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Education Policy Studies Laboratory.

<부록 표 5> 일본의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규제 실태

교육규제 항목	해당국의 실태
1. 외국교육기관의 현황 1) 유형 2) 유형별 학교 수, 학생 수	-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각종학교 형태로 존재함. 유형은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을 수용하는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와 특정 민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족계 외국인 학교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대략 120여개의 외국인학교가 있는바, 그 중 상당수가 한국, 북한, 중국 등 민족계 학교임.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1) 승인주체 2) 승인방식 3) 설립절차 4) 관련법령	- 승인주체: 대학의 경우 중앙정부인 문부과학대신,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지방광역단체인 도도부현의 지사 - 승인방식: 인가주의 - 설립절차: 학교법인 또는 준학교법인의 설립 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립 각종학교로 승인을 요함 - 관련법령: 문부과학대신이 발한 ‘각종학교규칙’에 근거하여 각 도도부현 단위에서 “외국인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각종학교 설치인가 등 심사기준”, “외국인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 각종 학교를 설치하는 (준)학교법인 기부행위 인가등 심사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외국대학의 분교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4월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대학설치기준, 단기대학설치기준 및 전문직대학원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음
3.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	- 내외국인 모두 가능: 학교법인립, 준학교법인립, 재단법인립, 무인가교 등으로 구분 됨. 설립자를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내국인도 설립가능
4.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가능 학교급	- 유/초/중/고/고등교육기관 모두 설립 가능 특별한 규제조항 없음
5.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여부	- 불가능, 설립인가 기준의 하나로 학교의 경영이 현저하고 영리 기업적이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각 도도부현의 관련 심사기준) - 한편, 대학의 경우는 현재 유한회사의 형태로 재무성의 회사설립인가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형태의 외국교육기관으로서 대표적인 Temple University Japan이 있으나 이는 문부과학성에 지도·감독권이 없는 대학임. 다만, 상급학교 입학 자격 및 학점 인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문부과학성의 설치 기준에 합당해야 함. Temple University Japan의 경우 잉여금 해외전출이 자유로우나 아직 송금 사례는 없음.
6.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시 요구 사항	-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부과학대신이 제정한 각종학교규칙 그리고 각 도도부현이 제정한 설치인가 등 심사기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졸업생이 국립대학에의 입학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서구 민간평가 기관의 인정을 받거나, 본국에서 해당국의 정규 과정과 동등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으로 각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7. 외국교육기관내 내국인	- 결정 주체: 개별학교 학교마다 기준이 상이하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의 경우 외국거

교육규제 항목	해당국의 실태
입학비용	<p>주 기간이 아닌 외국어 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 -다만, American School의 경우에는 영어교육학교에 3년 이상 재적하거나 입학심사시 어학능력에 대한 성적증명이 가능한자, 일본인 귀국자는 귀국 1년 이내 출원한자, 양친 가운데 한 사람의 영어 회화력이 충분한 경우로 제한됨(KOTRA, 2004: 21)</p>
8.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학력 인정	<p>- 각종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력인정을 하지 않음. 다만,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음. 먼저, 사립의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입학자격여부를 해당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서구 민간평가 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터내셔널 스쿨, 본국에서 해당국의 정규 과정과 동등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된 학교는 바로 입학자격이 인정되나 기타 민족학교의 경우에는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입학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문부과학성 통지) - 한편, 학교교육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외국계 대학의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술한 Temple University Japan의 졸업학력은 일본내에서 불인정되나(입학자격 및 학점 교환 인정됨) 미국 본교에서 학위 인정됨.</p>
9.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1) 자율성 2) 교원임용 3) 재정지원	<p>- 각종학교로서 일반학교와 같은 커리큘럼, 학생 선발과 교사 임용, 등록금 책정 등에 있어 강력한 규제는 없음. 각종학교규칙은 수업기간, 수업시수, 교원의 최저수, 시설·설비의 최저기준 등만을 규정하고있을 뿐임. -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로서 교직원면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교원임용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음. 각종학교규칙 제8조는 각종학교의 교원에게 그 담당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 기술, 기능을 보유할 것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임. -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으나, 도도부현 차원에서 학교부지 및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특히, 인건비, 교육연구경비, 관리경비,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학생 한 명당의 보조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p>
10. 외국교육기관의 수업료	<p>- 결정 주체: 개별학교 - 외국인학교의 경우, 수업료는 학교 간에 차이가 많은 편임: 통상 일반 학교의 10배 가량의 높은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수업료는 US\$ 기준으로 12,500에서 23,700 정도임. - 한편,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의무교육 단계 학교들에 있어서의 높은 수업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제도를 두고 있음.</p>

부록

<부록 표 6> 싱가포르의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규제 실태

교육규제 항목	해당국의 실태
1. 현황 1) 유형 2) 유형별 학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외국인학교(싱가폴 정부가 설립한 3개의 국제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International School 포함)와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싱가포르 정부가 설립)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2006년도 현재 35개의 외국인학교와 2개(2007년 1월 1개교가 개교하여 현재는 3개입)의 국제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음(싱가폴 교육부 홈페이지)
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1) 승인주체 2) 승인방식 3) 설립절차 4)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주체: 국가(교육부) 도시국가이므로 국가(교육부)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 승인방식: 인가주의 - 설립절차: 사업자등록청(R.O.C)에 회사법에 의한 Public Company Ltd.로 설립(대외 행정적인 절차나 행위를 모두 일반 회사에 준하여 행함) ->싱가폴 교육부에 사립학교(Private School)로 등록 *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선단체법(Charity Act)에 의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음. 부가가치세(GST: 물품서비스세)는 협상여하에 따라 면세 사업자로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교육법(EDUCATION ACT: CHAPTER 87)’, ‘외국인투자규정’
3.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모두 가능: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제조항 없음
4.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가능 학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고/고등교육기관 모두 설립 가능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제조항 없음
5.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인투자규정’에 교육은 ‘장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과실송금 금지 조항은 없음.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감면을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과실송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시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요구사항 있음: 외국인학교의 경우, 정기적으로 학생수를 보고해야 함. 시설물 증개축시 현지 교육시설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함 (정부설립)국제학교의 경우, 싱가포르 교육정책 가운데 이중언어정책(Bilingual language policy), 국가교육(National Education: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실시, 수업 시작전 전교생 매일 아침 조회(국기제양, 싱가포르 국가 부르기, 국민선서) 실시 등 3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함
7. 외국교육기관내 내국인 입학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 주체: 국가(교육부) -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입학 원칙적으로 불허. 한쪽 부모가 외국국적자일 경우에는 입학 허용. 내국인은 3년 이상 해외 교육 이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정부설립)국제학교는 내국인 입학 1/2이상 허용:

교육규제 항목	해당국의 실태
	<p>편입학도 가능하고 전학도 가능함. 오히려 내국인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Anglo-Chinese School(International)의 경우, 2006년 현재 재적생의 1/2 이상이 싱가포르 국적이거나 영주권자임.(ACS 홈페이지)</p>
<p>8.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학력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모두 학력은 인정되지만 국내대학 진학은 가능하지 않음 - 대부분 IB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국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싱가폴내 대학은 3개의 국립대학만 있으므로 내국인이 외국교육기관을 통해 국내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p>9.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1) 자율성 2) 교원임용 3) 재정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학교는 교육과정, 교원임용 등의 운영에 있어 해당국의 정책을 따르고 있음 - 국제학교는 일반학교나 자립형 학교보다 커리큘럼, 학생 선발과 교사 임용, 등록금 책정 등이 훨씬 자유로움 - 국제학교는 국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의 국내 학교 교원 임용도 가능함 - 외국인학교의 경우, 신규 설립시 정부차원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외국인학교인 Overseas Foreign School의 경우 약 144,000M2(약 43,600평)를 100년간 임대받고 있음. 이는 일반 내국인학교의 3배 면적에 2배의 기간에 해당되는 파격적인 우대조건임
<p>10. 외국교육기관의 수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에 대한 특별한 규제조항은 없음 - 외국인학교의 경우, 수업료는 학교 간에 차이가 많은 편임: 연간 수업료는 일반적으로 낮게는 S\$ 4,600~S\$ 14,000(한화 약 285~868만원)에서 높게는 S\$ 6,000~S\$ 18,000(한화 약 372~1,116만원)까지 다양함. 이에 비해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의 연간 수업료는 S\$ 1,800(한화 약 112만원)임 - 국제학교의 경우, 등록금은 연 S\$ 15,000 수준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50배, 자립형 학교에 비해서는 5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비싼 편임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경제관련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교육부는 교육과정, 국가정체성 교육, 수월성 교육 등의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재정경제부)과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MoM, 노동부)에서 교육산업육성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담당함. -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시의 지원 업무는 사실상 경제개발청이 주도하고 있음. 교육부는 국가정체성 유지와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설립 인가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임

부록

<부록 표7> 중국의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규제 실태

교육규제 항목	해당국의 실태
1. 유형	① 외국인학교 71개(2005년) ② 중외합작학교 700여개교(2004년) ③ 외국인유학학교(내국인학교내 국제부, 전면 허용)
2. 설립 1) 승인주체 2) 승인방식 3) 설립절차 4) 관련법령	- 승인주체: 대학교는 중앙정부인 국무원, 이외 전문대와 중등학교 등은 지방정부(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 우리의 도에 해당) - 승인방식: 인가주의 - 설립절차: 설립신청 → 45일내 비준여부결정 → 비준시 3년내 정식설립 신청서 제출 - 관련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외국합작학교 설립운영조례’ * 외국인학교규정: 中華人民共和國 國家教育部 關於開辦外籍人員子女學校的暫行管理辦法, 1995년 4월 공포
3. 설립주체	-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의 합작
4. 학교급	- 중·고등교육, 취학전 교육(학원도 가능)
5. 영리법인 여부	- 명문규정 없음. - “중외합작학교설립운영기구의 존속 기간에는 모든 자산은 중외합작학교 설립운영기구가 법에 따라 법인 재산권을 향유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점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설립기준	1. 법인이여야 함 2. 종교조직은 설립 불가능 3. 정관, 자산의 유효증명문서,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교사·재무회계원의 자격 증명 문서 제출하여 비준 받아야 함
7. 내국인 입학	1. 외국인학교에 대한 중국 교육부의 관리규정(http://www.jsj.edu.cn)에 내국인 입학금지규정을 명시 2. 합작학교는 “중국국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함. 국외학생모집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함.
8. 교육과정 및 학력인정	- 헌법·법률·국민윤리·국가상황 등의 내용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함. 외국인어문자를 사용하여 교수학습을 할 수 있으나, 단 응당 보통화와 규범한자를 기본교수학습언어문자로 하여야 한다.
9. 운영	- 상위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교육 운영 - 교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는 내국인. 외국교원은 학사 이상
10. 수업료	- 외국인 학교에서는 1년 평균 15,000~20,000달러의 학비가 소요된다. - 사립기숙형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1년에 13,800위안(한화 약200만원, 순수 학비는 6,300위안), 중학교는 14,800위안(순수 학비는 보통반의 경우 7,100위안, 실험반의 경우 10,000위안), 고등학교는 16,800위안(순수 학비는 8,800위안)이 소요된다. 외국인 학교에 비해 싸지만 일반 중국학교의 학비나 중국인들의 평균소득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편임. 중국 도시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함.

주요국의 교육규제 및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

발 행 2006년 12월
발행인 고 형 일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전화: 02) 3460-0345
팩스: 02) 3460-0117
<http://www.kedi.re.kr>

등 록
인쇄처 인쇄 :
전화 :

ISBN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